김정은 시기 자연유산 정책 특성 연구

2023 통일부 신진연구자 정책연구용역

연구자: 김서린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세계유산지속가능센터

통일부장관 귀중

목 차

1. 서론 ····· 5

가. 연구 배경 및 목적 ····· 5

나. 선행연구와 차이점 ····· 5

다. 연구의 구성 ····· 8

2. 북한의 자연유산 보존관리 체계 ····· 9

가. 자연유산의 개념과 대상 ····· 9

나. 자연유산 관련 법령 ····· 12

다. 자연유산의 보존관리 체계 ····· 13

1) 자연유산 보존관리 주체와 행정조직 ····· 13

2) 자연유산의 지정기준과 절차 ····· 16

3. 김정은 시기 자연유산 보존관리 정책 ····· 22

가. 김정은 시기 자연유산 보존관리 법제의 변천 ····· 22

1) 2014년 10월 24일, 김정은 『민족유산보호사업은 우리 민족의 력사와 전통을 빛내이는 애국사업이다』 담화 ····· 23

2) 『문화유산보호법』과 『민족유산보호법』의 제·개정 ····· 24

3) 『명승지, 천연기념물보호법』의 개정 ····· 40

나. 김정은 시기 자연유산 지정 현황 ····· 50

1) 『조선의 자연유산』을 통해 본 자연유산 지정 현황 ····· 50

2) 『민족유산』을 통해 본 자연유산 지정 현황 ····· 61

다. 김정은 시기 자연유산 정책의 주요 특성 ····· 63

1) 자연유산 확대 지정 ····· 63

2) 최신 과학기술 도입을 통한 자연유산의 기록화 및 보존관리 ····· 66

3) 국제적 기준에 따른 민족유산보호체계 정립 ····· 69

4) 자연유산을 통한 조선민족제일주의, 우리 국가제일주의 교양 ····· 72

5) 인민대중제일주의의 부상과 자연유산의 보존과 활용 ····· 75

IV. 결론: 자연유산 분야 남북 협력 방향 ····· 76

요약문

북한에서는 ‘문화재’를 ‘민족유산’이라 칭하며, 물질유산·비물질유산·자연유산으로 구분하고 있다. 남한에서는 60여 년간 지속해오던 ‘문화재’ 체제를 ‘국가유산’으로 바꾸고, 문화유산·자연유산·무형유산으로 구분하자는 논의가 한창이다. 2023년 3월 22일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자연유산법』)이 제정되고, 5월 16일에는 『국가유산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국가유산’ 체제로의 변모가 가시화되고 있다. 이처럼 3개의 유형으로 유산을 구분하는 체계는 북한에서 먼저 시작되고 있었다. 국제적 기준에 맞춰 유산 보호·활용 체계를 개편하는 시도는 김정은 시기에 집중적으로 나타난다.

김정은은 집권 직후 민족유산 관련 법제를 제·개정하였다. 김정은 시기에 민족유산 관련 법제를 여러 차례에 걸쳐 개정한 연유에는 비물질유산 보호와 활용에 있어서 법적 토대 마련, 자연유산 활용의 활성화 등의 다양한 해석이 따른다.

본 연구에서는 북한의 민족유산 중 한 유형인 자연유산을 주목하여 김정은 집권 이후 활발하게 전개된 자연유산 정책의 변화와 그 결과로서 지정 현황 및 보존 관리 실태에 대해 심도있게 분석하고, 자연유산 분야의 남북 협력 방향 제안에 있어 함의를 도출해보고자 하였다.

먼저, 1장에서 본 연구의 배경과 목적, 연구 내용과 방법에 대해 서술한다. 북한의 자연유산 및 유사한 의미를 갖는 면적 보호지역에 대한 남북의 선행 연구를 분석하고 본 연구와의 차이점과 본 연구의 타당성을 서술한다.

2장에서는 현행법을 기준으로 하여 북한의 자연유산 보존관리 체계에 대해 살펴본다. 3장에서는 정은 시기 전후의 자연유산 정책의 변화를 분석하고, 그 함의를 도출하였다. 또한 김정은 시기의 자연유산 지정현황을 파악하고, 새롭게 지정된 자연유산과 그 의미에 대해 파악한다. 2012년부터 현재까지의 로동신문, 민주조선, 조선중앙통신 및 기타 단행본과 연속간행물에 대한 내용분석을 통해 진행하였다. 4장에서는 2-3장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자연유산분야 남북협력 방향을 정리하였다.

김정은 시기 자연유산 관련 법제의 변천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여러 차례에 걸쳐 민족유산과 관련된 법령이 제·개정되었다. 집권 직후인 2012년에는 1994년 제정된 『문화유물보호법』의 효력을 없애고, 『문화유산보호법』을 개정하였다. 또한 2014년 발표한 “민족유산보호사업은 우리 민족의 력사와전통을 빛내이는 애국사업

이다” 담화에 김정은 위원장의 민족유산 보호 사업에 대한 관심이 드러나는데, 이 담화에서는 민족유산 보존관리의 중요성과 그 방법에 대하여 상세히 언급하고 있다. 이 담화 이후인 2015년에는 『민족유산보호법』을 새로이 제정하였으며, 2018년에는 동법을 수정·보충하고, 2021년에 『명승지·천연기념물 보호법』을 수정·보충하기에 이른다.

먼저, 김정은 시기 자연유산 정책의 특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자연유산의 확대 지정이 이뤄졌다. 2014년 담화문 발표 이후 5년간 새로 등록한 민족유산의 수가 250여 개에 이른다고 한다. 민족유산 관련 잡지, 신문자료 등을 참고하여 정리해보았을 때, ‘광포종오리’, ‘동중리금강벼랑’, ‘연안온천’, ‘마식령샘물’, ‘대화봉샘물’ 등의 천연기념물이, ‘선군룡림호’가 명승지로 지정되었다. 이렇게 새로 등록된 자연유산은 근현대 시기 혁명유산이라는 가치 특성을 보이며, 자연보호구와 명승지, 천연기념물 등의 여러 보호 대상으로 중복 지정되어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두 번째로는 최신 과학기술 도입을 통해 자연유산의 기록화, 보존관리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세 번째로 국제적 기준에 따른 민족유산보호체계를 정립하고자 하였다. 유산의 분류 체계를 재정립하고, 국제보호지역 등재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며, 행위 제한에 있어 금지조항을 추가하거나, 벌금을 부과하는 등의 관리가 심화되었다. 네 번째는 자연유산을 통해 조선민족제일주의, 우리 국가제일주의 교양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인민대중제일주의를 관철하기 위해 자연유산을 문화휴양지로 조성하고 전인민의 동원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끝으로, 자연유산 분야에 있어 남북 협력 방향으로 남북 전통조경 공동 연구 활성화 방안 도모, 남북 국제보호지역 공동등재 추진 등을 제안하였다.

김정은 시기 자연유산 정책 특성 연구

1. 서론

가. 연구 배경 및 목적

북한에서는 ‘문화재’를 ‘민족유산’이라 칭하며, 물질유산·비물질유산·자연유산으로 구분하고 있다. 남한에서는 60여 년간 지속해오던 ‘문화재’ 체제를 ‘국가유산’으로 바꾸고, 문화유산·자연유산·무형유산으로 구분하자는 논의가 한창이다. 2023년 3월 22일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자연유산법』)이 제정되고, 5월 16일에는 『국가유산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국가유산’ 체제로의 변모가 가시화되고 있다. 이처럼 3개의 유형으로 유산을 구분하는 체계는 북한에서 먼저 시작되고 있었다. 국제적 기준에 맞춰 유산 보호·활용 체계를 개편하는 시도는 김정은 시기에 집중적으로 나타난다.

김정은 집권 시기에는 여러 차례에 걸쳐 민족유산과 관련된 법령이 제·개정되었다. 집권 직후인 2012년에는 1994년 제정된 『문화유물보호법』의 효력을 없애고, 『문화유산보호법』을 개정하였다. 또한 2014년 발표한 “민족유산보호사업은 우리 민족의 력사와전통을 빛내이는 애국사업이다” 담화에 김정은 위원장의 민족유산 보호 사업에 대한 관심이 드러나는데, 이 담화에서는 민족유산 보존관리의 중요성과 그 방법에 대하여 상세히 언급하고 있다. 이 담화 이후인 2015년에는 『민족유산보호법』을 새로이 제정하였으며, 2018년에는 동법을 수정·보충하고, 2021년에 『명승지·천연기념물 보호법』을 수정·보충하기에 이른다.

김정은 시기에 민족유산 관련 법제를 여러 차례에 걸쳐 개정한 연유에는 비물질유산 보호와 활용에 있어서 법적 토대 마련, 자연유산 활용의 활성화 등의 다양한 해석이 따른다.

본 연구에서는 북한의 민족유산 중 한 유형인 자연유산을 주목하여 김정은 집권 이후 활발하게 전개된 자연유산 정책의 변화와 그 결과로서 지정 현황 및 보존 관리 실태에 대해 심도있게 분석하고, 함의를 도출해보고자 한다.

나. 선행연구와 차이점

관련 법령과 최고지도자의 교시에서 남북 모두 자연유산에 대한 연구조사 등 교류 협력에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다. 『자연유산법』의 제48조는 남북 자연유산의

보존에 관한 내용으로, 이 법에서는 “국가는 남북 자연유산의 보존 관리 및 활용을 위한 남북 간 상호교류 및 협력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남북 자연유산의 보존을 위해 북한의 자연유산을 보호, 지정, 관리 등에 대해 조사 연구할 수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1)]

앞서 언급한 김정은 위원장의 2014년 담화문에는 김정은 시기의 민족유산 정책의 핵심 방향이 담겨 있다. 이 담화문에서 국제기구 및 다른 나라들과의 교류사업을 강조하며, 물질유산, 비물질유산, 자연유산을 세계유산으로 등록해야 함을 적시하고 있으며, 민족문화유산과 관련한 학술 교류 등의 남북 교류 사업 또한 언급하고 있다. 이렇듯 남북이 모두 국가유산(혹은 민족유산)에 대한 남북 교류 협력에 대한 필요성을 체감하고 있다는 점은 국가[민족]유산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와 교류 협력에 대한 대응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김정은 시기 자연유산 정책 변화를 엿볼 수 주된 키워드 중 하나는 ‘정보화’이다. 2019년 수정·보충된 『사회주의 헌법』에서는 1970년대부터 강조해오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에 ‘정보화’를 추가하여 과학기술과 정보화를 부각하고 있듯이, 자연유산 정책에도 이에 대한 열망이 반영되는 것을 엿볼 수 있다. 예컨대, 2014년 담화문에도 “력사유적과 유물들, 명승지와 천연기념물들, 비물질문화유산들을 자료기지화하고 그에 대한 정보 교류를 활발히 벌려야 합니다.”라고 언급되었으며, 2017년에는 자연공원의 자료기지를 구축했다는 연속간행물의 한 꼭지를 확인할 수 있다. 김정은 집권 후의 자연유산에 대한 정책의 변화와 실천 사례를 면밀히 파악하여 남북 자연유산 교류 협력에 있어 시사점을 도출할 필요가 있겠다.

남한의 연구자들에 의해 수행된 북한의 유산에 대한 그 동안의 연구는 주로 북한 ‘민족유산’의 세 가지 유형 중 ‘물질유산’을 주목하였다. 먼저, 남북의 문화재 관련 법제를 시기적으로 내용분석을 하였으며,[2)] 또한 북한의 도시개발[3)]과 환경정책[4)]에 관한 연구에서는 북한의 국토개발과 관련된 내용과 환경의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며 문화유산에 대해 언급하기도 하였다.

---

1)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약칭:자연유산법)」(시행 2024. 3. 22. 법률 제19251호, 2023. 3. 21., 제정), 제48조 , 〈http://www.yeslaw.com/lims/front/page/fulltext.html?pAct=view&pPromulgationNo=209086〉 (검색일: 2023.11.22.)

2) 박상철·김창규, 『북한의 문화재보호관계법제』 (세종: 한국법제연구원, 1995); 남궁승태, “남북 통일을 대비한 문화재보호법제에 관한 연구,” 『문화정책논총』, 제14집(2002), pp. 195-227; 남보라·서순복, “북한의 문화유산 보호 관련 법제의 변천과 내용분석,” 『법학논총』 제21권 3호(2014), pp.191~224.

3) 대한토목학회, 『북한의 도시 및 지역개발』, 서울:보성각. 2009.

4) 김정욱·한무영·이동수·박순애·김기호, 『남북한 환경 비교정책.2, 물환경, 대기, 폐기물, 도시계획』, 서울:서울대학교 출판부, 2008

자연유산과 유사한 개념인 국립공원 등 면적 보호지역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기도 하였으며,[5] 북한의 국제보호지역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어, 국제보호지역 등재에 있어 남북 교류 협력에 대한 방안이 제시[6]되기도 하였다. 이들 연구에서는 면적 보호지역을 다뤘다는 점에서 대상에서의 유사성이 있으나, 자연보호지역의 유형 중 하나로 명승지나 천연기념물의 일부가 언급되는 등 유산에 대한 정책이나 구체적인 지정 현황에 대해 중점적으로 분석되지 않았기에 본 연구와 차이가 있다.

한편, 최근에는 북한에서의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비물질유산'의 개념을 정립하고, 활발하게 지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무형유산 관련 변화상을 감지하여 추적한 연구가 급증하였다.[7] 정책 동향 분석에 머물지 않고, 무형유산을 토대로 한 음악, 무용, 씨름 등 각 분양에 있어 남북 협력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8]

남북의 문화재 교류 협력과 관련된 연구를 살펴보면, 남북역사학자교류협의회 등을 중심으로 하여 교류 경험을 기반으로 그간의 교류협력 현황을 정리하고, 방향을 제안했던 연구들[9]이 있었다. 또한 인류무형문화유산 등 세계유산 공동등재를 통한 교류협력방안으로 구체화되고 있다.[10] 그밖에 금강산에 위치한 신계사의 남북 공동복원 등[11]을 통한 불교 문화재 교류 협력에 대한 연구 등[12]이 이뤄졌다.

북한의 자연유산에 관한 연구로는 명승지와 천연기념물 관련 법제를 중점으로 분석한 연구가 수행되었다[13]. 또한 자연유산의 유형 중 하나인 명승지나 천연기념물

---

5) 김서린, "북한 보호지역의 보전과 이용,"『국립공원연구지』, 제9권 3호(2018), pp. 365~373.
6) 김명신, "북한의 국제보호지역 정책 동향 연구,"『현대북한연구』, 제24권 3호(2021), pp. 7~41.
7) 신현욱·박영정, "북한의 무형문화유산 법제 도입 현황과 무형문화유산 분야 남북 교류 협력 방안,"『한국민요학』 제41집(2014), pp.127~151; 박영정, "북한의 무형문화유산 정책 동향 연구,"『무형유산』, 제7호(2019), pp. 5~29; 김채원, "북한 무용 분야 무형유산의 계승과 그 실재에 관한 소고(小考),"『무형유산』, 제7호(2019), pp. 83~109; 권혁희, "북한 전통문화의 문화유산화 과정과 주민 일상의 변화 : 비물질문화유산 지정과 주민 생활문화의 변화를 중심으로,"『현대북한연구』 제24권 3호(2021): pp. 70~106.
8) 배인교, "북한의 전통음악관련 무형유산의 전승과 남북한 협력 방안,"『무형유산』, 제7호(2019), pp. 31~52; 윤동환, "남북한 무형문화유산 교류의 전망,"『무형유산학』, 제3권 2호(2018), pp. 121~140. 이우영·남보라, "새로운 접촉지대의 모색, 무형문화유산: 인류무형문화유산 '씨름'을 중심으로,"『현대북한연구』 제22권 3호(2019), pp. 174~199.
9) 오양열, "북한의 문화재 정책과 남북 교류·협력 방안,"『북한연구』, 제6호(2003), pp. 161~199; 하문식, "북한의 문화재 관리와 남북 교류,"『한국학』, 제30권 1호(2007), 279~305; 전영선·신준영,『북한의 문화재 정책과 남북 문화유산협력』, (서울:통일교육원, 2016), pp. 1~97; 최광식, "통일시대 남북한 문화유산 교류와 협력,"『博物館學報』, 제33호(2017), pp. 1~11.
10) 송민선, "인류무형문화유산 남북 공동등재를 위한 교류협력방안 연구,"『문화재』 제50권 2호(2017), pp. 94~115; 김덕순, "남북 무형유산 교류 협력의 다자간 협력 틀 모색 -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남북 공동 등재 사례,"『문화재』 제52권 3호(2019), pp. 252~269.
11) 신법타, "불교입장에서 본 생명가치와 남북화해 협력,"『생명연구』, 제5집(2003), pp. 194~202.
12) 최성은, "불교문화재의 대북(對北)교류에 관한 고찰 -불교조각과 석조문화재를 중심으로-,"『강좌미술사』, 제41호(2013), pp. 147-181; 서유석, "북한불교의 이해와 남북 불교 교류의 과제,"『보조사상』, 제55호(2017), pp. 193~230.
13) 김성욱, "북한의 명승지·천연기념물보호와 관련한 법 제도에 관한 고찰,"『가천법학』, 제5권 1호

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수행되었다. 명승지의 지정 현황을 중심으로 연구[14], 동아시아의 명승 지정 현황을 비교하며 북한을 언급한 연구[15] 등이 수행되었다. 천연기념물과 관련한 연구에서는 보존관리 체계를 분석하며 지정 현황, 관리 주체, 관리 방법 등을 분석한 연구가 있다[16]. 이들 연구는 남북의 명승지와 천연기념물의 법제와 지정 현황 등에 대해 분석했으나, 자연유산을 통합적으로 분석하지 않았거나 김정은 집권 이전 시기 연구로 시기적 범위가 한정되었다. 최근 국립문화재연구원에서 발간한 단행본에서 자연유산 관련 법제 분석, 지정 현황 등에 대한 연구가 수행된 바 있으나,[17] 김정은 집권 이후의 정책 변화에 대해 면밀히 감지하고, 이에 대한 함의를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본 연구와 차별성을 갖는다.

본 연구자는 박사학위 논문에서 북한의 이름난 경치[명승지]가 국가유산 보호 체계에 편입되는 과정을 주목하여 명승지의 정책과 보존·관리 실태를 시계열적으로 분석한 바 있지만, 자연유산의 두 가지 유형 중 명승지에만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본 연구는 박사학위 논문의 후속 연구로서 명승지뿐만 아니라 천연기념물에 대한 정책 변천과 보존관리 및 지정 현황을 파악하여 김정은 시기 자연유산 정책과 그 함의에 대한 전체적인 윤곽을 그려나가고자 한다.

다. 연구의 구성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북한 전역의 자연유산을 대상으로 삼는다.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주로 김정은 집권 이후인 2012년부터 현재까지를 중점적으로 다루지만, 전후 맥락을 파악하기 위해 김정은 집권 이전 시기에 대한 개관을 포함한다.

먼저, 1장에서 본 연구의 배경과 목적, 연구 내용과 방법에 대해 서술한다. 북한의 자연유산 및 유사한 의미를 갖는 면적 보호지역에 대한 남북의 선행 연구를 분석하고 본 연구와의 차이점과 본 연구의 타당성을 서술한다.

2장에서는 현행법을 기준으로 하여 북한의 자연유산 보존관리 체계에 대해 살펴본다. 3장에서는 정은 시기 전후의 자연유산 정책의 변화를 분석하고, 그 함의를 도

(2012), pp. 501~533

14) 이강민, “북한 명승의 현황 및 지정분석에 관한 연구,” 상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3

15) 김지혜, “우리나라 명승 지정의 현황 및 개선방향 연구: 한,중,일,북한과의 비교,” 상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7

16) 나명하, “남북한 천연기념물 보존관리의 비교연구,” 한경대학교 산업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7; 나명하, “우리나라 天然記念物 保存 管理에 關한 硏究,” 조선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10.

17) 이원호, “북한 자연유산의 보존관리 체계,”『북한의 문화·자연유산과 남북교류협력 이해하기』(대전: 국립문화재연구소, 2021), pp. 62~89; 이선, “북한의 자연유산 현황과 과제 - 천연기념물을 중심으로 -,”『북한의 문화·자연유산과 남북교류협력 이해하기』(대전: 국립문화재연구소, 2021), pp. 276~301.

출하였다. 또한 김정은 시기의 자연유산 지정현황을 파악하고, 새롭게 지정된 자연유산과 그 의미에 대해 파악한다. 2012년부터 현재까지의 로동신문, 민주조선, 조선중앙통신 및 기타 단행본과 연속간행물에 대한 내용분석을 통해 진행하였다. 4장에서는 2-3장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자연유산분야 남북협력 방향을 정리하였다.

2. 북한의 자연유산 보존관리 체계

가. 자연유산의 개념과 대상

북한에서 '문화재[18]'는 '민족유산'이라 불리며, '사회주의적 민족문화건설'의 원칙에 따라 '역사적 및 예술적, 학술적, 경관적 가치를 가지는 나라의 귀중한 재부'로 정의된다. 민족유산 관련 법은 크게 세 차례에 걸쳐 새로 제정되었는데 법령에 따라 유산의 구분과 평가방식이 바뀌었다(<표 1> 참고). 자연유산 분야에서 특기할만한 변화는 2015년 『문화유산보호법』을 파기하고, 『민족유산보호법』을 새로 채택한 것이다. 이 법에서 『민족유산보호법』 상 '민족유산'의 한 유형에 포함되었다는 것은 물론 법률 용어로 '자연유산'이 등장하게 되었다. 그전까지는 '자연유산'에 속하는 '명승지', '천연기념물'이 『명승지, 천연기념물보호법』으로 보호되고 있었으며, '자연유산'으로 통칭하는 개념은 없었다.

『명승지, 천연기념물보호법』과 『민족유산보호법』에서 정의하는 자연유산의 유형과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명승지, 천연기념물보호법』에 따르면, 북한에서 '자연유산'은 '명승지'와 '천연기념물'로 구분된다. 『명승지, 천연기념물보호법』 제 2조에서 "명승지, 천연기념물은 아름다운 경치로 이름이 났거나 희귀하고 독특하며 학술교양적, 관상적 가치가 큰 것으로 하여 국가가 특별히 지정하고 보호하는 지역이나 자연들이다."로 정의된다.

2015년 채택된 『민족유산보호법』 에서는 "자연유산에는 이름난 산, 호수, 폭포,

18) 남한에서는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 이후,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를 갖는 것을 '문화재'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으나, 2023년 5월 16일 『국가유산기본법』이 제정되어 '국가유산'으로 그 명칭이 수정되었다. 또한 『문화재보호법』에서는 '문화재'를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로 분류하지만, 『국가유산기본법』에서는 '문화유산','자연유산','무형유산'으로 구분한 후 각 유형별로 하위 개별법률을 제정하였다. 본 고는 『국가유산기본법』이 시행되기 전에 작성된 것으로 현행법에 따라 '문화재'라 표기하였다.

계곡, 동굴, 바다가, 섬 같은 명승지와 여러 가지 특이한 동식물, 화석, 자연바위, 광천 같은 천연기념물이 속한다.”라며 명승지와 천연기념물을 구분하여 유형을 서술했지만, 2018년 개정된 법령에서는 명승지와 천연기념물의 유형을 통칭하여 서술하였으며, ‘로두’가 추가되었다. 북한의 『조선말대사전』에 따르면 ‘로두(노두, 露頭)’는 “유용광물의 층이 땅겉면으로 드러난 것”을 말하며, 우리나라에서 노두는 “광맥(鑛脈), 암석이나 지층, 석탄층 따위가 지표(地表)에 드러난 부분. 광석을 찾는 데에 중요한 실마리가 된다.”고 정의된다[19]. 마찬가지로 2011년 수정보충된 『명승지, 천연기념물보호법』에도 제2조 ‘명승지, 천연기념물과 그 종류’에는 ‘로두’가 없다가 2021년 수정보충된 『명승지, 천연기념물보호법』의 제2조에 ‘자연로두’가 추가되었다. 다만 2011년의 동법 제17조(명승지 ,천연기념물의 등록대상)에는 ‘로두’가 있어 기존부터 ‘로두’를 천연기념물로 지정·관리해왔으나 김정은 시기에 민족유산 관계 법령을 정비하며 유산의 정의 및 종류와 관련된 조문에 ‘로두’를 새로이 추가한 것으로 보인다. <표 2>는 2021년 수정보충된『명승지, 천연기념물보호법』의 2조를 중심으로 북한 자연유산의 정의와 그 종류를 정리한 것이다.

표 1. 북한 민족유산의 법적 유형과 자연유산

<table>
<tr><th colspan="2">관련 법령</th><th colspan="3">구분</th><th colspan="3">평가</th></tr>
<tr><td rowspan="7">물질유산,비물질유산*</td><td rowspan="2">문화유물보호법 (1994 채택)</td><td rowspan="2">문화유물</td><td>역사유적</td><td rowspan="2">국보</td><td rowspan="2">준국보</td><td rowspan="2">일반</td></tr>
<tr><td>역사유물</td></tr>
<tr><td rowspan="2">문화유산보호법 (2012 채택)</td><td rowspan="2">물질문화유산</td><td>역사유적</td><td colspan="2">국보</td><td>일반</td></tr>
<tr><td>역사유물</td><td>국보</td><td>준국보</td><td>일반</td></tr>
<tr><td rowspan="4">민족유산보호법 (2015 채택, 2018 수정보충)</td><td rowspan="2">물질유산</td><td>역사유적</td><td colspan="2">국보</td><td>보존</td></tr>
<tr><td>역사유물</td><td>국보</td><td>준국보</td><td>일반</td></tr>
<tr><td>비물질유산</td><td>국가</td><td>지방</td><td colspan="2">국보</td><td>지방</td></tr>
<tr><td rowspan="2">자연유산</td><td colspan="2">-</td><td colspan="3">명승지</td></tr>
<tr><td rowspan="2">자연유산</td><td rowspan="2">명승지·천연기념물 보호법 (1995 채택, 2021년 수정보충)</td><td rowspan="2">명승지, 천연기념물</td><td colspan="2">-</td><td colspan="3">천연기념물</td></tr>
<tr><td colspan="2">-</td><td colspan="3">명승지</td></tr>
</table>

출처 : 연구자 작성
* 현행법 상 분류체계를 따라 물질유산, 비물질유산, 자연유산으로 분류

19) 『네이버 표준국어대사전』, <https://ko.dict.naver.com/#/entry/koko/94ba659eb2d8447ca84f98c86c83875d>(검색일: 2023.11.22.)

표 2. 북한 자연유산의 정의와 구분

유형		정의	구분
자연유산	명승지	명승지, 천연기념물은 아름다운 경치로 이름이 났거나 희귀하고 독특하며 학술교양적, 관상적 가치가 큰 것으로 하여 국가가 특별히 지정하고 보호하는 지역이나 자연들이다.	이름난 산과 호수, 폭포, 계곡, 동굴, 바다가, 섬 같은 지역
	천연기념물		특이한 동식물, 화석, 자연바위, 광천, 자연로두

출처 :『명승지, 천연기념물보호법』(2021.6.27.) 제2조

나. 자연유산 관련 법령

자연유산은 명승지와 천연기념물을 통칭하는 개념으로 명승지, 천연기념물 보호구역과 같이 해당 자연유산을 보호하기 위해 주변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행위를 통해 일종의 면(面)적 보호지역이라 볼 수 있다.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식물이 있는 지역을 보호하기 위해 자연보호구로 지정되기도 하였으며('조선시조새' 보호구), 반대로 오가산과 같이 자연보호구로 지정되었던 지역의 자연유산적 가치가 있는 동·식물을 천연기념물로 지정한 사례도 있다. 관련된 법령을 정리하면, <표 3>와 같다.

표 3. 북한 보호지역 관련 현행 법령과 보호지역

구분	관련 법령(제정 연도)	보호지역 명
환경 분야	환경보호법(1986)	자연보호구(생물권보호구, 원시림보호구, 동물보호구, 식물보호구, 명승지 보호구, 수산자원보호구), 특별보호구
	유용동물보호법(1998)	동물보호구, 새보호구
	자연보호구법(2009)	자연보호구(생물권보호구, 원시림보호구, 동물보호구, 식물보호구, 명승지 보호구)
민족유산 분야	명승지, 천연기념물보호법(1995)	명승지, 천연기념물, 명승지, 천연기념물보호구역
	민족유산보호법(2015)	물질유산, 비물질유산, 자연유산(명승지, 천연기념물), 력사유적유물보호구역, 명승지, 천연기념물보호구역
토지이용 분야	토지법(1977)	보호림(방풍림, 사방림, 위생풍치림, 수원함양림)
		특별보호림, 자연보호림구
산림 분야	산림법(1992)	특별보호림, 일반보호림, 자연보호림구

* 출처 : 국가정보원(2022a,b)를 참고하여 현행법을 중심으로 연구자 작성

다. 자연유산의 보존관리 체계

1) 자연유산 보존관리 주체와 행정조직[20]

북한에서 문화유산 분야를 총괄하는 조직은 바로 내각의 문화성이다. 문화성 산하에는 민족유산보호지도국이 있으며, 각 도, 직할시 별로 민족유산 보호 관리소가 위치한다.

자연유산인 명승지와 천연기념물은 국토환경보호성과 그 산하의 명승지 및 천연기념물관리총국에서 담당했으나, 2021년 개정된 『명승지, 천연기념물보호법』에서는 민족유산보호지도국으로 담당 기관이 변경되었다.

각 도마다 명승지 및 천연기념물 관리소가 있고, 각 명승지마다 관리소가 위치한다. 또한 비상설 기구인 명승지, 천연기념물 심의평가 위원회에서 명승지 지정 시 심의 평가를 시행한다(『명승지, 천연기념물보호법』 제 19조).

각 조직별 기능을 살펴보면, 각 명승지 및 천연기념물별로 관리소가 위치한다. 관리소에는 관리원이 상주하거나 근처에 거주하는 농민이 관리원을 병행한다. 특히 중요한 명승지나 천연기념물일 경우에는 전문직으로 관리원이 배치된다. 이들은 지도서에 따라서 관리 지침을 따라 조사하고, 이상 시 상급 기관인 도급 명승지 및 천연기념물 관리소에 보고한다.

도급 명승지 및 천연기념물 관리소는 크게 명승지와 천연기념물 담당 부서, 그리고 경리와 회계를 맡는 부서로 분리되며 30명 정도의 인원으로 구성된다. 명승지 부서는 연구실과 관리실로 분리되는데, 명승지의 보존, 유지와 관광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명승지 내의 동식물 자원, 수질, 구조물, 시설물 현황 등을 조사한다. 예컨대 식물의 병해충 여부를 조사하고, 명승지 내 동식물 자원의 무분별한 이용[21] 등을 조사하여 대책을 수립한다.

천연기념물 부서 또한 연구실과 관리실로 분리되며, 연구실에서는 주로 연구사들이 동식물 등의 천연기념물을 연구한다. 연구사들은 천연기념물의 개체 수를 조사하여 개체 수의 변동 원인을 추적하며, 보존 대책 등을 수립한다. 이들 연구사들은

---

20) 이 절은 연구자가 박사학위 논문에서 2010년대 초반에 자연유산 분야 종사자 출신인 북한이탈주민 A씨와의 면담을 통해 드러낸 내용을 인용한 것이다. 김정은 시기 제·개정된 법령의 조직 관련 조문과 비교하면 현재와 있으므로 추후 김정은 시기에 자연유산 분야 종사 경험이 있는 북한이탈주민과의 면담을 통한 2차 검증이 요구된다.

21) 식물 자원의 무분별한 사용 실태에 대해 북한이탈주민A씨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예를 들어서 나무같은 경우는 벌레가 먹었다 던지, 누가 와서 불 떼느라고 잘라 갔다던지, 나무껍질 벗겨 갔다던지..,북한이탈주민A씨 면담(2022.3.10.)” 김서린, “명승지에 대한 북한의 정책 특성과 국가유산화 과정 - ‘조선 6대 명산’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22, pp. 80~84).

전공자들로 구성된다. 연구실과 관리실의 실장급은 분초급당원이며 업무와 생활 총화[22], 학습, 강연회, 사상 동태 관찰 등의 당사업을 병행한다. 실장 밑에는 과장이 있으며, 이들이 조사 내용을 종합하여 보고한다.

또한 명승지나 천연기념물 주변에 광산을 개발하는 등의 이슈가 발생하면 비상대책으로 중앙에 긴급보고를 올린다. 긴급보고는 중앙당에 제의로 올라가게 되고, 해당 지역의 명승지나 천연기념물과 그 주변 환경을 보호하는 게 먼저인지, 광산 개발을 통한 경제적 이익이 우선인지 중앙당에서 결정을 내려준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민족유산을 관리하는 쪽에 비중을 많이 실어준다고 한다. 북한이탈주민에 따르면 묘향산이 유명한 사례이다.

> 특히 묘향산 같은 게 유명한 사건이지. 해방 이후에, 묘향산에 그 쪽에 금광맥이 발견이 되 가지고, 거기에 광산 개발하려고 하다가 김일성이가 묘향산에다가 광산 개발하면 뭐이가 되겠나. 하지마라 해서 안 했던 사건도 있고. 그게 되게 유명한 사건이에요. 해방 이후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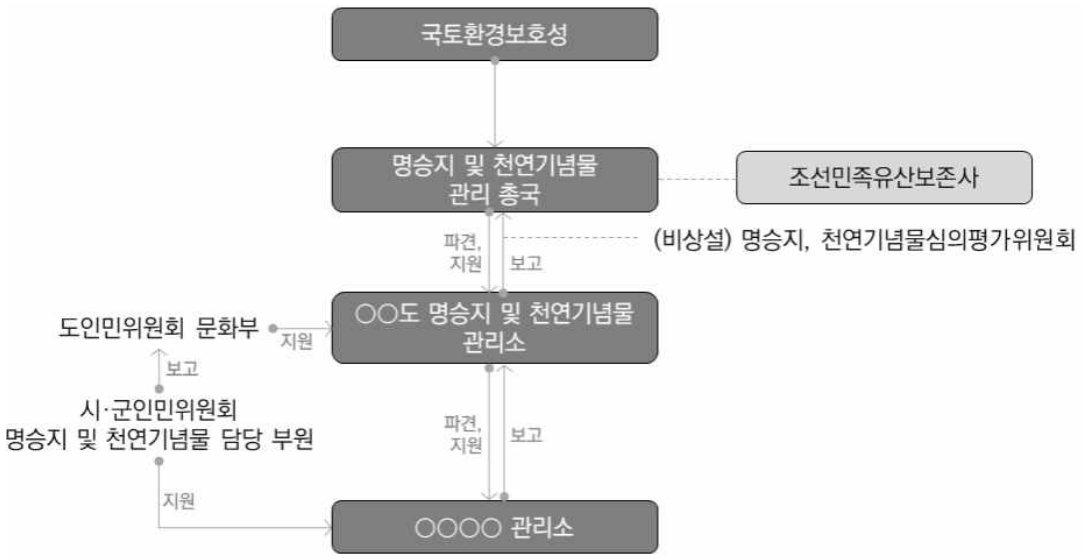


그림 2. 자연유산 행정조직 체계도
*출처: 북한이탈주민과의 면담을 토대로 작성(김서린, 2022; 82)

22) 생활총화란 “북한 주민들이 당이나 근로단체와 같은 소속 조직을 매개체로 주, 월, 분기, 연별로 각자의 업무와 공/사생활을 반성하고 상호 비판하는 모임”을 말한다. 『통일부 북한정보포털』, <https://nkinfo.unikorea.go.kr/nkp/term/viewNkKnwldgDicary.do?pageIndex=1&dicaryId=122>(검색일: 2023.11.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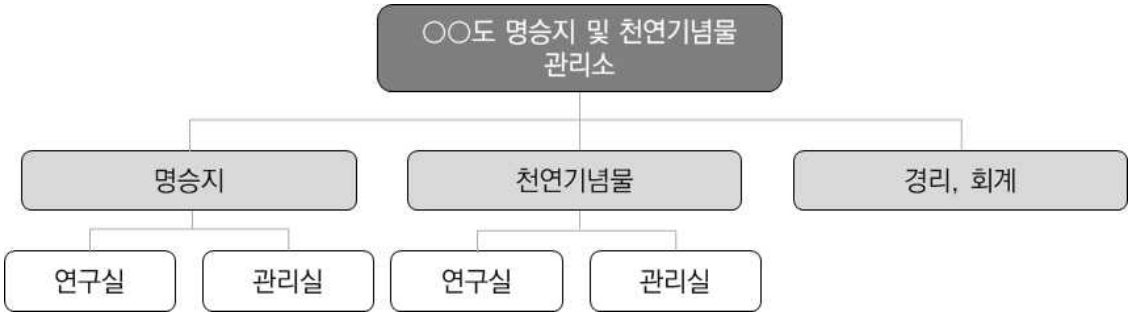


그림 3. 도 명승지 및 천연기념물 관리소 행정조직 체계도
*출처: 북한이탈주민 면담을 토대로 작성(김서린, 2022; 83)

한편, 예산의 경우에는 남한처럼 국비가 지원되는 시스템이 아니라, 지방에서 각출하여 지출하는 체계이기 때문에 관리에서 소외되는 명승지도 발생하게 된다.

> 한국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되면 국가 예산에서 돈을 받아다 가지고 돈을 밑에 까지 쭉 집행해주잖아. 그런데 북한같은 경우에는 중앙에서는 계획만 해주고, 그 계획에 기초해서 지구계획위원회나 각 지방 계획위원회에서 지방의 예산으로 집행해야 하기 때문에 조금은 소외된다고 할까.

명승지의 경우에는 각 명승지마다 관리소가 위치하여 보존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구월산 명승지 관리소, 평안남도 송암동굴 명승지 관리소(메아리, 2017년 9월 17일 기사)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구월산과 내금강과 같은 경우 각각 구월산 명승지 관리소, 내금강 명승지 관리소가 관리하는 반면, 1996년 개발된 평양의 용악산과 같은 경우에는 용악산 유원지 관리소에서 관리하고 있다.

한편, 특수 지역에 있는 명승지, 천연기념물의 관리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기관이 한다(『명승지, 천연기념물 보호법』 제 21조, 『민족유산보호법』 제 48조). 백두산은 명승 제18호로 언급되고 있지만, 명승지보다 더 위계가 높은 혁명전적지로서 특수 지역에 해당하기 때문에 혁명전적지 관리소에서 관리한다.

2) 자연유산의 지정기준과 절차

가) 자연유산 지정 기준

우리나라에서는 「문화재보호법 시행령」별표 1의 2에서 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 기준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표 4>은 남한의 「문화재보호법 시행령」별표 1의 2 중 자연유산의 지정기준을 발췌한 것이다. 남한은 가치에 기반하여 지정 기준을 서술하고 있다. '명승'은 역사적, 학술적, 경관적 가치를 가지며, 그밖에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제2조에 따른 자연유산에 해당하는 것을 지정하며, 자연명승, 역사문화명승, 복합명승으로 구분하고 있다. 천연기념물의 경우 동물은 역사적, 학술적 가치와 그밖의 가치, 식물은 역사적, 학술적, 경관적, 그박의 가치, 지질·지형은 학술적, 그밖의 가치, 천연보호구역은 동물・식물이나 지질・지형 등 자연적 요소들이 풍부하여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구역으로 대표적으로 '독도 천연보호구역'이 속한다.

북한의 자연유산의 경우,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의 원문을 구할 수 없었기에 일부 법령의 조문을 통해서만 살펴볼 수 있다. 북한 명승지의 지정 기준은 『명승지, 천연기념물보호법』 제 17조 '명승지, 천연기념물 등록대상'에서 파악할 수 있는데, 명승지와 천연기념물을 통칭하여 4가지 기준으로 서술하고 있다(<그림 4>).

표 4. 남한의 자연유산 지정 기준

문화재의 종류	지정 기준
명승	1.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화재로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 이상의 가치를 충족하는 것 가. 역사적 가치 1) 종교, 사상, 전설, 사건, 저명한 인물 등과 관련된 것 2) 시대나 지역 특유의 미적 가치, 생활상, 자연관 등을 잘 반영하고 있는 것 3) 자연환경과 사회 · 경제 · 문화적 요인 간의 조화를 보여주는 상징적 공간 혹은 생활 장소로서의 의미가 있는 것 나. 학술적 가치 1) 대상의 고유한 성격을 파악할 수 있는 각 구성요소가 완전하게 남아있는 것 2) 자연물 · 인공물의 희소성이 높아 보존가치가 있는 것 3) 위치, 구성, 형식 등에 대한 근거가 명확하고 진실한 것 4) 조경의 구성 원리와 유래, 발달 과정 등에 대하여 학술적으로 기여하는 바가 있는 것 다. 경관적 가치 1)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자연물로서 심미적 가치가 뛰어난 것 2) 자연 속에 구현한 경관의 전통적 아름다움이 잘 남아있는 것 3) 정자 · 누각 등의 조형물 또는 자연물로 이루어진 조망지로서 자연물, 자연현상, 주거지, 유적 등을 조망할 수 있는 저명한 장소인 것 라. 그 밖의 가치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자연유산에 해당하는 것 2. 해당 문화재의 유형별 분류기준 가. 자연명승: 자연 그 자체로서의 심미적 가치가 인정되는 자연물 1) 산지, 하천, 습지, 해안지형 2) 저명한 서식지 및 군락지 3) 일출, 낙조 등 자연현상 및 경관 조망지점 나. 역사문화명승: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만들어진 인문적 가치가 있는 인공물 1) 정원, 원림(園林) 등 인공경관 2) 저수지, 경작지, 제방, 포구, 마을, 옛길 등 생활·생업과 관련된 인공경관 3) 사찰, 경관, 서원, 정자 등 종교·교육·위락과 관련된 인공경관 다. 복합명승: 자연의 뛰어난 경치에 인문적 가치가 부여된 자연물 1) 명산, 바위, 동굴, 암벽, 계곡, 폭포, 용천(湧泉), 동천(洞天), 구곡(九曲) 등 2) 구비문학, 구전(口傳) 등과 같은 저명한 민간전승의 배경이 되는 자연경관
천연기념물	1. 동물 가. 나목1)부터 3)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화재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 이상의 가치를 충족하는 것 1) 역사적 가치 가) 우리나라 고유의 동물로서 저명한 것 나) 문헌, 기록, 구술(口述) 등의 자료를 통하여 우리나라 고유의 생활, 문화 또는 민속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것 2) 학술적 가치 가) 석회암 지대, 사구(砂丘: 모래 언덕), 동굴, 건조지, 습지, 하천, 폭포, 온천, 하구(河口), 섬 등 특수한 환경에서 생장(生長)하는 동물·동물군 또는 그 서식지·번식지·도래지로서 학술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는 것 나) 분포범위가 한정되어 있는 우리나라 고유의 동물·동물군 또는 그 서식지·번식지·도래지로서 학술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는 것 다) 생태학적·유전학적 특성 등 학술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는 것 라) 우리나라로 한정된 동물자원·표본 등 학술적으로 중요한 것 3) 그 밖의 가치 가) 우리나라 고유동물은 아니지만 저명한 동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것 나) 우리나라에서는 절멸(絶滅, 아주 없어짐)된 동물이지만 복원하거나 보존할 가치가 있는 것 다) 협약 제2조에 따른 자연유산에 해당하는 것 나. 해당 문화재의 유형별 분류기준 1) 동물과 그 서식지·번식지·도래지 등 2) 동물자원·표본 등 3) 동물군(척추동물의 무리를 말한다) 2. 식물 가. 나목1)부터 3)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화재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 이상의 가치를 충족하는 것 1) 역사적 가치 가) 우리나라에 자생하는 고유의 식물로 저명한 것 나) 문헌, 기록, 구술 등의 자료를 통하여 우리나라 고유의 생활 또는 민속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것 다) 전통적으로 유용하게 활용된 고유의 식물로 지속적으로 계승할 필요가 있는 것 2) 학술적 가치 가) 국가, 민족, 지역, 특정종, 군락을 상징 또는 대표하거나, 분포의 경계를 형성하는 것으로 학술적 가치가 있는 것

	나) 온천, 사구, 습지, 호수, 늪, 동굴, 고원, 암석지대 등 특수한 환경에 자생하거나 진귀한 가치가 있어 학술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는 것 3) 경관적 가치 가) 자연물로서 느끼는 아름다움, 독특한 경관요소 등 뛰어나거나 독특한 자연미와 관련된 것 나) 최고, 최대, 최장, 최소 등의 자연현상에 해당하는 식물인 것 4) 그 밖의 가치 협약 제2조에 따른 자연유산에 해당하는 것 나. 해당 문화재의 유형별 분류기준 1) 노거수(老巨樹): 거목(巨木), 명목(名木), 신목(神木), 당산목(堂山木), 정자목(亭子木) 등 2) 군락지: 수림지(樹林地), 자생지(自生地), 분포한계지 등 3) 그 밖의 유형: 특산식물(特産植物), 진귀한 식물상(植物相), 유용식물(有用植物), 초화류(草花類) 및 그 자생지·군락지 등 3. 지질·지형 가. 나목1)부터 4)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화재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 이상의 가치를 충족하는 것 1) 학술적 가치 가) 지각의 형성과 관련되거나 한반도 지질계통을 대표하거나 지질현상을 해석하는 데 중요한 것 나) 암석의 변성·변형, 퇴적 작용과 관련한 특이한 조직을 가지고 있는 것 다) 각 지질시대를 대표하는 표준화석과 지질시대의 퇴적 환경을 해석하는 데 주요한 시상화석인 것 라) 화석 종(種)·속(屬)의 모식표본(模式標本: 특정 화석 종을 대표하는 표본)인 것 마) 발견되는 화석의 가치가 뛰어나거나 종류가 다양한 화석산지인 것 바) 각 지질시대를 대표하거나 지질시대의 변성·변형, 퇴적 등 지질환경을 해석하는 데 중요한 지질구조인 것 사) 지질구조운동, 화산활동, 풍화·침식·퇴적작용 등에 의하여 형성된 자연지형인 것 아) 한국의 특이한 지형현상을 대표할 수 있는 육상 및 해양 지형현상인 것 2) 그 밖의 가치 협약 제2조에 따른 자연유산에 해당하는 것 나. 해당 문화재의 유형별 분류기준 1) 암석, 광물과 지질경계선: 어란암(魚卵岩), 구상(球狀) 구조나 구과상(球顆狀: 중심으로부터 방사상으로 성장하여 만들어진 결정의 형태) 구조를 갖는 암석, 지각 깊은 곳에서 유래한 감람암(橄欖巖) 등 2) 화석과 화석 산지 3) 지질구조 및 퇴적구조 가) 지질구조: 습곡, 단층, 관입(貫入), 부정합, 주상절리 등 나) 퇴적구조: 연흔(漣痕: 물결 자국), 건열(乾裂), 사층리(斜層理), 우흔(雨痕: 빗방울 자국) 등 4) 자연지형과 지표·지질현상: 고위평탄면(高位平坦面), 해안·하안단구, 폭포, 화산체(火山體), 분화구, 칼데라(caldera: 화산 폭발로 분화구 주변에 생긴 대규모의 우묵한 곳), 사구, 해빈(海濱: 해안선을 따라 모래, 자갈, 조개껍질 등이 퇴적되어 만들어진 지형), 갯벌, 육계도(陸繫島: 물과 잘록하게 이어진 모래섬), 사행천(蛇行川), 석호(潟湖: 퇴적물이 만의 입구를 막아 바다와 분리되어 생긴 호수), 카르스트 지형(화학적 용해 작용으로 생성된 침식 지형), 석회·용암동굴, 돌개구멍(pot hole), 침식분지, 협곡, 해식애(海蝕崖: 파도의 침식에 의해 형성된 해안 절벽), 선상지(扇狀地: 산 아래의 평원에 하천이 운반한 모래, 자갈 등이 퇴적되어 만들어진 부채꼴 모양의 지형), 삼각주, 사주(砂洲: 바닷가에 생기는 모래사장), 사퇴(砂堆: 모래 퇴적물), 토르(tor: 풍화작용에 따라 기반암과 분리되어 그 위에 남겨진 독립적인 암괴), 타포니(tafoni: 풍화작용으로 암석 표면에 움푹 파인 구멍들이 벌집처럼 모여 있는 구조), 암괴류, 얼음골, 풍혈(風穴: 서늘한 바람이 늘 불어 나오는 구멍이나 바위틈), 온천, 냉천, 광천(鑛泉: 광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샘) 등 4. 천연보호구역 동물·식물이나 지질·지형 등 자연적 요소들이 풍부하여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구역으로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것 가. 보호할 만한 천연기념물이 풍부하거나 다양한 생물적 · 지구과학적 · 경관적 특성을 가진 대표적인 것 나. 협약 제2조에 따른 자연유산에 해당하는 것

* 출처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별표 1의2] <개정 2023. 4. 25.>발췌

명승지, 천연기념물 보호법

주체110(2021)년 6월 27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631호로 수정보충

제2조 (명승지, 천연기념물과 그 종류)
명승지, 천연기념물은 아름다운 경치로 이름이 났거나 희귀하고 독특하며 학술교양적, 관상적가치가 큰 것으로 하여 국가가 특별히 지정하고 보호하는 지역이나 자연물이다.
명승지에는 이름난 산과 호수, 폭포, 계곡, 동굴, 바다가, 섬 같은 지역이, 천연기념물에는 특이한 동식물, 화석, 자연바위, 광천, 자연로두 같은 자연물이 속한다.

제17조 (명승지, 천연기념물의 등록대상)
명승지, 천연기념물의 등록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자연풍치가 전형적이고 희귀하고 독특하며 시공간적으로 반복되지 않는 지형 또는 지물
2. 정착 또는 희유동물가운데서 학술적 및 관상적으로 특이한 종이거나 의의있는 동물
3. 학술적 및 풍치상 고유한 특성을 가진 식물
4. 지리, 지질학적형성조건과 자기의 고유한 특성을 유지하고있는 호수, 온천, 화석, 광석, 로두

그림 4. 북한의 자연유산 지정 기준
*출처 :『명승지, 천연기념물 보호법』(2021.6.27.) 제 2조, 제 17조 발췌

나) 자연유산 지정 절차

북한의 자연유산은 『명승지, 천연기념물보호법』 제 13조에 따라 내각이 지정한다. 지정 조사는 명승지, 천연기념물 보호지도기관에서 하며, 필요에 따라 과학연구기관, 교육기관을 비롯한 해당 전문기관도 할 수 있다(제 9조). 조사 내용은 명승지의 위치, 역사적 유래, 크기와 특성 또는 보존가치와 전망, 지대의 자연지리적 상태, 생태계에 대한 자료가 포함된다(제 11조).

명승지나 천연기념물을 등록하려는 기관은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여 중앙 명승지, 천연기념물보호지도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이 등록신청서에는 등록하려는 대상의 이름, 소재지, 역사적 유래, 특성, 보존가치, 현상태, 이용과 보존 전망, 자연주위환경, 등록 근거 같은 것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지형도, 위치도, 사진자료를 첨부해야 한다(제 14조).

자연유산에 대한 심의평가는 중앙 명승지, 천연기념물 보호지도기관 산하의 비상설 명승지, 천연기념물심의평가위원회에서 시행한다(제 13조). 중앙 명승지, 천연기념물 보호지도기관은 비상설 명승지, 천연기념물심의평가위원회를 열고 해당 대상의 역사적 유래, 특성, 보존가치 같은 것에 대하여 정확히 심의평가하여야 한다(제 15조).

심의에서 등록할 가치가 있다고 평가된 유산은 내각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제 15조). 내각의 승인을 받은 유산은 등록 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번호, 유산의 이름, 등록 날짜, 소재지, 보호구역 면적 같은 것을 정확히 기록하여야 한다(제 16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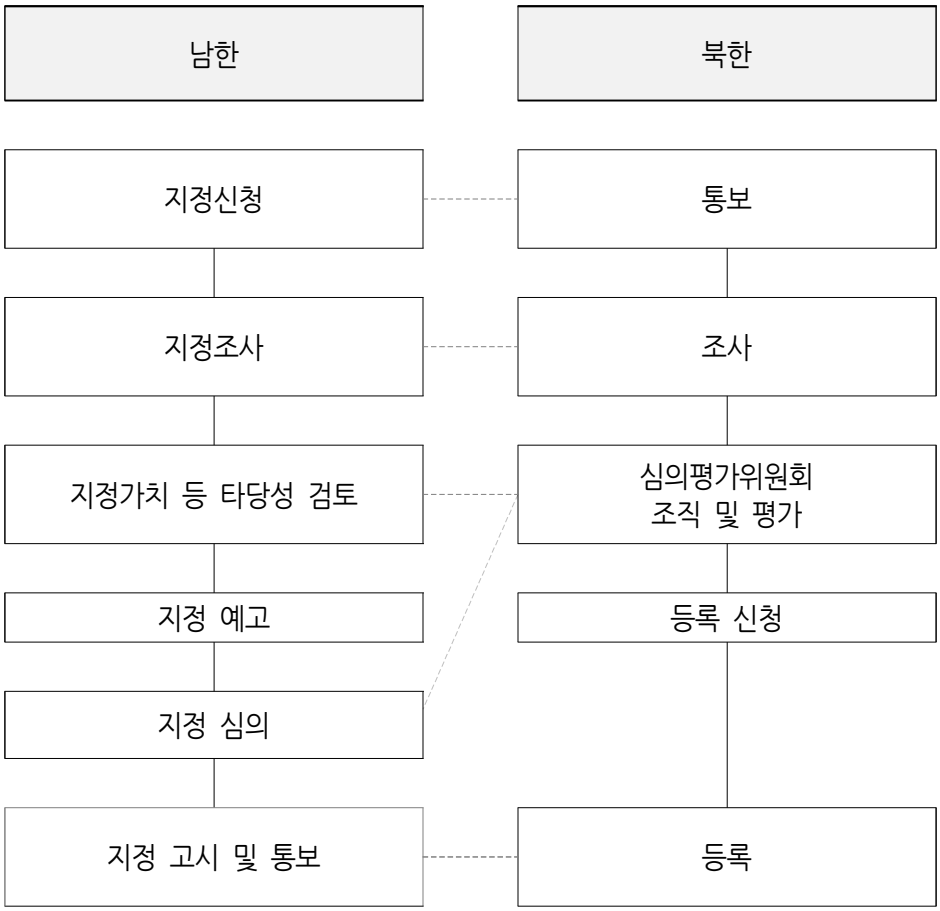


그림 5. 남북한의 자연유산 지정 절차 비교
* 출처: 남한은 문화재청(2016, 15)에서 발췌하였으며,
북한은『명승지, 천연기념물 보호법(2021년 수정보충)』참고하여 작성(김서린, 2022; 88 재인용)

3. 김정은 시기 자연유산 보존관리 정책

가. 김정은 시기 자연유산 보존관리 법제의 변천

김정은 집권 이후에는 민족유산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었는데, 집권 직후인 2012년에는 1994년 제정된 『문화유물보호법』의 효력을 없애고, 『문화유산보호법』을 채택하였다. 2014년 발표한 “민족유산보호사업은 우리 민족의 력사와전통을 빛내이는 애국사업이다” 담화에 김정은의 민족유산 보호 사업에 대한 관심이 드러나는데, 이 담화에서는 명승지, 천연기념물 보존관리의 중요성과 그 방식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이 담화 이후인 2015년에는 기존의 『문화유산보호법』의 효력을 없애고, 『민족유산보호법』을 새로 개정하였다.

표 5. 김정은 시기 북한의 자연유산 관련 교시와 법령

북한 법령의 위계체계		시기	자연유산 관련 교시 및 법령
교시	김정은 교시	2014.10.24	민족유산보호사업은 우리 민족의 력사와 전통을 빛내이는 애국사업이다
법령	법령,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결정	2012.8.7.	『문화유산 보호법』 제정
		2015.6.10.	『민족유산 보호법』 제정
		2016.3.24.	『명승지, 천연기념물보호법』 개정
		2018.11.24.	『민족유산 보호법』 개정
		2018.12.19.	『명승지, 천연기념물보호법』 개정
		2021.6.2.7.	『명승지, 천연기념물보호법』 개정

* 출처: ‘북한 법령의 위계체계’는 임병수(2000, 47)의 분석 틀을 참고하여 연구자 수정 보완. 교시 및 법령은 국가정보원(2022b), 조선민족유산보존사(2020) 등을 참고하여 작성

1) 2014년 10월 24일, 김정은 『민족유산보호사업은 우리 민족의 력사와 전통을 빛내이는 애국사업이다』 담화

김정은은 시기 수차례에 걸쳐 민족유산 관련 법제를 제·개정하며 민족유산 보호 체계를 개편했는데, 그 중심에는 2014년 김정은이 발표한 『민족유산보호사업은 우리 민족의 력사와 전통을 빛내이는 애국사업이다』 담화문이 있다. 김정은이 이 담화문을 발표한 2014년 10월 24일은 김정일이 김일성의 유훈통치 일환으로 집권 직후 추진했던 단군릉 개건을 지도했던 1994년 10월 29일로부터 20년 된 시기이기도 하다. 이 담화문을 통해 김일성-김정일의 유훈통치로 이어져 승리를 쟁취한 민족유산보호사업이 김정일-김정은으로 이어지는 것임을 천명한다.

담화문에서 김정은은 "력사유적과 유물, 명승지와 천연기념물관리사업에 대한 법규범과 규정들을 잘 만들고 인민보안기관을 비롯한 감독통제기관들에서 그것을 어기는 현상들에 대한 법적통제를 강화하도록 하여야 합니다."라고 언급했듯이[23], 담화문 발표 직후인 2015년 『민족유산보호법』이 제정되어 기존의 『문화유산보호법』을 대체한다. 담화문에 담긴 내용 중 선언적 구호 상당 내용이 그대로 조문에 반영되었다. 2015년 『민족유산보호법』 제4조에서 '민족유산보호사업의 기본원칙'은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 "주체성의 원칙과 력사주의원칙, 과학성의 원칙은 민족유산을 보호하고 계승발전시켜나가는데서 일관성있게 견지하여야 할 기본원칙이다.[24]"

2014년 담화문에도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과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께서 밝혀주신 민족유산보호에 관한 사상리론을 지도적지침으로 틀어쥐고 철저히 구현해나가야 한다며." 민족문화유산을 보호하는 기본 원칙에 대해 주체성의 원칙과 력사주의원칙, 과학성의 원칙 등 세 가지 원칙을 꼽았다.[25]

담화문에는 민족유산보호지도국의 역할과 권능을 높이고, 민족유산을 세계유산으로 등록하기 위해 국제기구와 다른 나라, 특히 남측 및 해외 동포들과 국제학술교류를 강화할 것이 명시되어 있다. 이를 통해 "나라의 유구한 유구한 역사와 찬란한

---

23) "민족유산보호사업은 우리 민족의 력사와전통을 빛내이는 애국사업이다," 『로동신문』, 2014.10.30.
24) 「민족유산보호법」(2015. 6. 10. 채택), 제4조.
25) 2014년 담화문에도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과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께서 밝혀주신 민족유산보호에 관한 사상리론을 지도적지침으로 틀어쥐고 철저히 구현해나가야 한다며." 민족문화유산을 보호하는 기본 원칙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원칙을 언급하였다. "주체성의 원칙과 력사주의원칙, 과학성의 원칙은 민족문화유산을 보호하고 계승발전시켜나가는데서 일관성있게 견지하여야 할 기본원칙입니다."

문화는 물론 북의 민족유산보호정책을 대외에 선전하는 데도 좋고, 온 겨레가 민족 중시의 입장에서 역사문제에 대한 공통의 인식을 갖고 '단군'의 후손으로서 '단군조선'의 역사를 빛내는데 이바지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한다. 또한 우리 인민의 민족 전통을 살려나가야 할 것을 언급하며, 조선민족제일주의정신을 높이 발양시키기 위한 여러 사업을 제시한다. 그 중에 하나로 명승지와 천연기념물 보호관리사업이 언급되는데, 이와 관련된 내용을 발췌해보면 다음과 같다.

> 명승지와 천연기념물들에 대한 보호관리사업을 잘하여야 합니다.
> 우리 나라는 예로부터 산좋고 물맑은 삼천리금수강산으로 불리워왔습니다. 금수강산이란 비단에 수를 놓은것처럼 아름다운 강산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나라에는 백두산과 금강산, 묘향산, 총석정을 비롯하여 세상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명산, 명승지들이 많으며 국가적으로 보호하고 후세에 길이 전해갈 천연기념물들도 많습니다. 아름다운 명승지들이 착취사회에서는 돈많고 권세있는자들의 유흥지로 되여있었지만 인민이 주인으로 된 우리 사회에서는 그것이 다 인민의 유원지, 문화휴식터로 되고 있습니다.
> 우리는 명승지들의 아름다운 풍치를 돋구어주는 나무 한그루, 풀 한포기, 돌 하나도 귀중히 여기며 명승지구역에 있는 새나 산짐승들도 적극 보호하여야 합니다.
> 명승지의 탐승도로와 시설물들을 애호관리하며 명소들을 더 많이 찾아내여 인민들에게 기쁨과 웃음을 더해주어야 합니다.
> 명승지를 보호관리하는데서 중요한것은 명승지의 생태환경을 파괴하지 않고 원상대로 보존하는것입니다. 산불과 산림람벌, 지하자원개발과 병해충, 오수와 공업페설물로 인하여 명승지가 파괴되거나 오염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2) 『문화유산보호법』과 『민족유산보호법』의 제·개정

김정은 시기에는 3차례에 걸쳐 민족유산 관련 법이 제·개정 되었다. 김정은 집권 직후인 2012년 8월 7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584호로 『문화유산보호법』이 채택되어 1994년 김정일 시기 제정되었던 『문화유물보호법』을 대체하게 되었다.

2014년 김정은의 담화문 '민족유산보호사업은 우리 민족의 력사와전통을 빛내이는 애국사업이다' 발표 이후인 2015년에는 기존의 『문화유산보호법』의 효력을 없애고, 『민족유산보호법』을 새로 개정하였다. 2018년에는 『민족유산보호법』 다시 수정보충하였다.

가) 2012년 『문화유산보호법』, 2015년 『민족유산보호법』의 제정

(1) 용어 변화와 보호대상 확장 : ‘문화유산’에서 ‘민족유산’으로

기존의 『문화유산보호법』에서 법령의 명칭은 '문화유산'을 담고 있으면서도, 제1조 (문화유산보호법의 사명)에서는 "민족문화유산을 원상대로 보존하고"라는 표현이 등장하는 등, '문화유산'과 '민족문화유산'이 섞여 쓰였지만,[26] 2015년 채택된 『민족유산보호법』에서 ‘민족유산’으로 통일되었다.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는 조문인 제1조 (민족유산보호법의 사명)에서도 "민족유산보호법은 민족유산보호관리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민족유산을 원상대로 보존하고 옳게 계승발전시키며 인민들의 민족적긍지와 자부심을 높여주는데 이바지한다.“고 언급하며, 민족유산으로 일관된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민족유산의 정의와 관련된 또 다른 변화는 민족유산의 구분에 자연유산이 추가되었다는 것이다. 『문화유산보호법』에서는 ‘물질문화유산’과 ‘비물질문화유산’으로 구분했다면, 『민족유산보호법』의 제2조 (민족유산의 정의)에서는 ‘문화’를 삭제하여 ‘물질유산’과 ‘비물질유산’으로 변경하였으며, ‘자연유산’을 추가하고, 자연유산에는 명승지와 천연기념물이 속한다고 정의하였다.

> "자연유산에는 이름난 산, 호수, 폭포, 계곡, 동굴, 바다가, 섬 같은 명승지와 여러가지 특이한 동식물, 화석, 자연바위, 광천 같은 천연기념물이 속한다.[27]”

동법 제9조 (민족유산보호법의 규제대상)에서 “자연유산의 보호와 관련한 질서는 해당 법규에 따른다.” 라고 언급하기 때문에 『민족유산보호법』에서 자연유산을 다룬다 해도 『명승지, 천연기념물보호법』이 효력을 잃는 것은 아니며, 2015년 제정된 『민족유산보호법』에서는 제 2조 정의와 관련된 내용을 제외하고는 자연유산과 관련된 조문이 특별히 언급되고 있지 않다.

(2) 민족유산보호사업의 전국가적, 전인민적 사업화

2014년 담화문에서는 민족유산보호사업에 있어 “전국가적, 전인민적인 사업으로 벌려나가야 한다”고 언급하며, 전인민의 참여를 강조하고 있다. 『문화유산보호법』의 제6조는 ‘전국가적, 전사회적인 문화유산보호관리원칙’이었으나, 『민족유산보호법』의 제6조는 ‘전국가적, 전인민적인 민족유산보호원칙’에 대한 조항으로 '사회' 대신 '인민'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 또한 『문화유산보호법』에서는 동 조항에서 '문화유산담당 관리제'를 실시한다고 했지만, 『민족유산보호법』에서는 “국가는

26) 「민족유산보호법」(2015. 6. 10. 채택), 제4조.
27) 「민족유산보호법」(2015. 6. 10. 채택), 제2조.

민족유산보호사업에 대한 통일적인 지도체계를 세우며 전체 인민이 민족유산보호사업에 애국의 마음을 다 바치도록 한다.”라며 일부 담당자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민족유산보호사업에 전인민의 참여를 강조한다.

(3) 민족유산보호사업에서의 과학성의 원칙 실천

‘과학성의 원칙’은 2014년 담화문에서 강조된 3가지 원칙 중 하나로 신법에서도 강조되고 있다. ‘과학성의 원칙’은 과학연구기관과의 연계, 역사유물의 보존처리 시 최신시료 사용 및 국내 생산, 민족유산의 ‘자료기지화’, 조선민족유산보존사의 역할 증진 등 네 가지 주요 사업으로 요약된다.[28] ‘자료기지화’와 관련된 조문은 제10조(민족유산발굴 및 수집의 계획화)로 아래처럼 민족유산 발굴 시 ″민족유산의 분포도를 작성″해야 한다는 조항, 제58조는 “민족유산을 자료기지화”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 “중앙민족유산보호지도기관은 력사자료에 기초하여 민족유산의 분포도를 작성하고 민족유산의 발굴 및 수집사업을 전망성있게 계획적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에서는 직접적으로 ‘자료기지화’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 제58조(종합적인 자료기지화)
> “중앙민족유산보호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민족유산을 자료기지화하고 그에 대한 정보교류를 활발히 벌려야 한다.”

또한 제56조(민족유산보호부문의 과학연구조건보장, 성과도입)은 『문화유산보호법』에도 있던 내용이지만, 『민족유산보호법』에서 과학성의 원칙에 따라 전망계획과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여 실천할 것이 새로 추가되었으며, 민족유산보호사업에 새로운 과학기술을 도입할 때에는 중앙민족유산보호지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과학기술을 도입하되 중앙에서 체계적으로, 신중하게 접근하여 관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내각과 해당 기관은 민족유산보호부문의 과학연구기지를 튼튼히 꾸리고 연구조건을 보장하여주어야 한다.
> 민족유산보호기관과 해당 기관은 민족유산보호부문의 과학연구를 위한 전망계획과

28) 최명철, “민족유산보호사업을 과학화하는데서 나서는 과업,”『민족유산』, 제1호(2019), pp.19~20.

년차별계획을 세우고 과학연구사업을 실속있게 벌리며 과학연구사업에서 이룩된 성과와 경험을 민족유산보호관리에 적극 받아들여야 한다.
민족유산보호사업에 새로운 과학기술을 도입하려 할 경우에는 중앙민족유산보호지도기관의 승인을 받는다."

(4) 민족유산 평가·관리 주체의 중앙화·전문화

민족유산 등록 시 중앙민족유산보호지도기관의 심의평가를 받아야 하며, 비상설로 위원회를 둬야 하는데 『민족유산보호법』에서는 이들 위원회의 전문분야를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제19조 (민족유산심의평가위원회의 조직)
민족유산의 심의평가를 위하여 중앙민족유산보호지도기관에 비상설로 물질유산심의평가위원회와 비물질유산심의평가위원회를 둔다.
비상설물질유산심의평가위원회와 비상설비물질유산심의평가위원회는 과학, 교육, 문화, 체육, 보건, 민족유산보호부문을 비롯한 해당 부문의 전문가들로 구성한다.

모호했던 기관이 구체화되기도 하였다. 예컨대, 『문화유산보호법』에서는 "문화유산복원설계의 승인은 중앙문화유산보존지도기관이 한다."고 명시했지만, 『민족유산보호법』에서는 제47조에서 복원설계 시 중앙민족유산보호지도기관의 합의를 거쳐 해당 '설계심의승인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해당 설계기관은 중앙민족유산보호지도기관이 비준한 기술과제에 근거하여 민족유산의 복원설계를 하여야 한다. 민족유산복원설계는 중앙민족유산보호지도기관의 합의를 거쳐 해당 설계심의승인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29)]

한편, 법 조문 상에서 새로운 기관이 등장하기도 하는데, '조선민족유산보존사'가 대표적이다. '조선민족유산보존사'는 2014년 담화문에도 등장하는 기관으로 민족유산에 대한 조사와 발굴, 복원 및 보수의 설계, 보존과 관련한 과학연구와 자문, 집필, 편집, 출판, 자료기지화, 과학기술교류와 같은 사업을 수행하는데, 남한의 국립문화재연구원과 유사한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볼 수 있겠다.

"중앙민족유산보호지도기관은 조선민족유산보존사를 전문분야의 실력있는 일군들로 꾸리고 그들의 역할을 높여 민족유산보호사업에서 과학연구중심, 자문기관으로서의 기능을 바로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29) 「민족유산보호법」(2015. 6. 10. 채택), 제47조.

조선민족유산보존사는 민족유산에 대한 조사와 발굴, 복원 및 보수의 설계, 보존과 관련한 과학연구와 자문, 집필, 편집, 출판, 자료기지화, 과학기술교류와 같은 사업을 한다[30].”

(5) 국제적 기준에 부합한 민족유산 보호사업 추진

북한에서는 2003년 고구려고분군을, 2013년에는 개성역사유적지구를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시킨 바 있다. 개성역사유적지구는 2007년 세계유산 등재신청을 했으나, 2008년 세계유산위원회에서 등재보류 판정을 받은 후 2012년 재신청을 하여 2013년 6월 23일 캄보디아 프놈펜 평화궁전에서 개최된 제37차 세계유산위원회(WHC)에서 등재 확정된 것이다. 2008년 이코모스 위원회에서 등재를 보류한 이유는 세 가지였는데 먼저, 고려 왕조 수도인 개성의 탁월한 보편적인 가치(OUV, Outstanding Value)를 보여줄 수 있는 유적에 대해 재고할 것, 두 번째는 신청 유산의 문화 및 자연환경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도록 경계를 재설정할 것, 마지막으로 향후 개발 등으로 유적의 가치를 훼손할 수 있는 잠정적인 위협에서 보호할 수 있는 완충 지역을 설정할 것이다.[31] 2011년 신청서를 보완 제출했으나, 등재서 미비로 2012년에 심사가 진행되어 2013년 등재 권고 판정을 받은 것이다. 이러한 시행착오를 겪고 어렵게 등재에 성공한 것이기 때문에 유산의 가치 증명, 경계 설정, 완충구역 설정과 개발위협으로부터의 보호 체계 등에 대한 고민이 있었을 것이다. 2014년 담화문과 2015년 제정된 『민족유산보호법』에도 세계유산과 관련된 조항이 다수 등장한다.

제25조(민족유산의 세계유산등록활동)
중앙민족유산보호지도기관은 우리 나라의 우수한 물질유산과 비물질유산, 자연유산들을 세계유산으로 등록하기 위한 활동을 계획적으로 전망성있게 진행하여야 한다.

제30조(력사유적보호구역)
세계유산으로 등록된 력사유적에는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피해를 줄수 있는 모든 행위가 엄격히 금지된 핵심구역과 일정한 행위가 제한된 완충구역을 정한다.

제33조(력사유적표식주, 설명문판의 설치)
세계유산으로 등록된 력사유적에는 세계유산표식을 하여야 한다.

30) 「민족유산보호법」(2015. 6. 10. 채택), 제57조.
31) 박성진, “세계유산 ‘개성역사유적지구’의 보존·활용 방안 연구,” 『현대북한연구』, 제16권 3호(2013), pp. 61~107.

제39조(민족유산참관)
세계유산으로 등록된 력사유적을 참관하거나 력사유적, 유물에 대한 촬영을 하려 할 경우에는 중앙민족유산보호지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보호지역 내 엄격한 행위제한 근거가 마련된 것도 특기적이다. 예컨대, 금지 사항 중 공공건물이나 묘지 조성 등의 건설행위와 가축 방목 등의 행위제한 사항이 추가되었다. 역사유적보호구역 내 시설물의 소유권도 민족유산보호기관으로 명시되어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였다.

제31조(력사유적보호구역안의 시설물철수)
민족유산보호기관과 지방정권기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력사유적보호구역안에서 력사유적보존관리에 지장을 줄수 있는 공공건물이나 살림집, 시설물, 묘지 같은것을 제때에 철수시키며 력사유적을 리용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그것을 민족유산보호기관에 넘겨주어야 한다.

제32조(력사유적보호구역에서 금지사항)
2. 승인없이 공공건물이나 살림집, 시설물을 건설하는 행위
6. 묘지를 쓰는 행위
7. 집짐승을 방목하는 행위

제33조(력사유적표식주, 설명문판의 설치)
민족유산보호기관과 지방정권기관은 력사유적에 표식주, 설명문판, 주의사항판 같은것을 정해진 규격대로 만들어 세워야 한다.

나) 2018년 『민족유산보호법』 개정

(1) 자연유산의 보호 관리에 대한 조문 추가

2018년 개정된 『민족유산보호법』에서 자연유산과 관련한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3장에 물질유산, 비물질유산, 자연유산의 보호관리에 대한 내용이 각각 절로 등장한다는 점이다. 제3장 3절 '자연유산의 보호관리'에 대한 내용은 『명승지, 천연기념물 보호법』의 제3장 '명승지, 천연기념물 관리'의 내용과도 중첩되는 내용도 존재한다. 『명승지, 천연기념물 보호법』을 중심으로 유사한 조문을 비교하면 <표 6>와 같다.

『명승지, 천연기념물보호법』 의 3장은 20조부터 37조까지 총 18개 조항으로 이뤄져 있다. 『민족유산보호법』 의 3장 3절은 48조부터 55조까지 8개 조항으로 구성된다. 양적인 차이에서도 나타나듯 『명승지, 천연기념물보호법』이 더 구체적으로 자연유산의 관리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32].

『민족유산보호법』에만 있는 조항은 제 53조 (자연피해방지)로 "민족유산보호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벼락과 큰물, 산불을 비롯한 자연재해로부터 명승지, 천연기념물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라는 내용이다.

표 6. 『명승지, 천연기념물보호법(2021)』의 제3장과 『민족유산보호법(2018)』 제3장 3절의 주요 내용 비교

『명승지, 천연기념물보호법』 2011.12.21.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052호로 수정	『민족유산보호법』 2018.11.24.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477호로 수정보충
제20조 (명승지, 천연기념물관리체계확립) 명승지, 천연기념물관리를 잘하는것은 명승지, 천연기념물의 손상을 막고 원상대로 유지할수 있게 하는 근본방도이다. 민족유산보호기관은 명승지, 천연기념물관리체계를 세우고 그 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하여야 한다.	-
제21조 (명승지, 천연기념물의 관리기관) 명승지, 천연기념물의 관리는 민족유산보호기관과 그 관리를 분담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가 한다. 특수지역에 있는 명승지, 천연기념물의 관리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기관이 한다.	제48조 (자연유산보호관리의 담당자) 명승지, 천연기념물의 보호관리는 민족유산보호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가 한다. 그러나 특수지역에 있는 명승지, 천연기념물의 보호관리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기관이 한다.
제22조 (명승지, 천연기념물의 관리분담) 해당 인민위원회는 기관, 기업소, 단체에 명승지, 천연기념물의 관리를 정확히 분담해주어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분담받은 명승지, 천연기념물의 관리를 정상적으로 하며 국토관리총동원기간에는 집중적으로 하여야 한다.	제49조 (자연유산관리의 분담) 해당 인민위원회는 기관, 기업소, 단체에 명승지, 천연기념물의 관리를 분담해주어야 한다. 명승지, 천연기념물의 관리를 분담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는 명승지, 천연기념물에 대한 보호관리를 정상적으로 하여야 한다. 국토관리총동원기간에는 명승지, 천연기념물에 대한 보호관리를 집중적으로 한다.
제23조 (명승지, 천연기념물보호구역) 국가는 명승지, 천연기념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호구역을 정한다. 명승지, 천연기념물보호구역은 중앙민족유산보호지도기관이 해당 중앙기관과 합의하고 내각 또는 비상설자원개발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명승지, 천연기념물보호구역은 명승지, 천연기념물보존관리기준에 맞게 정하여야 한다.	제50조 (명승지, 천연기념물보호구역) 명승지, 천연기념물의 보호를 위하여 명승지, 천연기념물보호구역을 정한다. 명승지, 천연기념물보호구역은 중앙민족유산보호지도기관이 해당 중앙기관과 합의하고 내각 또는 비상설자원개발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제24조 (명승지, 천연기념물에 대한 관찰)	제52조 (명승지, 천연기념물에 대한 관찰, 기록, 통

32) 『민족유산보호법』과 다르게 『명승지, 천연기념물보호법』에서만 언급되고 있는 자연유산의 관리에 있어서의 구체적 사항은 자연유산의 관리체계확립(제20조), 보호구역의 시설관리(제26조), 제방공사·옹벽공사·모래잡이언제공사 등의 보호공사(제27조), 산림자원(제29조)와 동물자원의 보호(제30조), 지하수 이용과 관련된 지반침하 방지(제32조), 환경질서 준수사항(제33조), 이상현상 통보, 대책 수립 의무(제34조), 위치 이동 및 복원(제35조), 매매 및 대외반출금지(제36조), 영구보존(제37조)에 대한 내용이다.

『명승지, 천연기념물보호법』 2011.12.21.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052호로 수정	『민족유산보호법』 2018.11.24.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477호로 수정보충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명승지, 천연기념물에 대한 담당관리원을 두고 명승지, 천연기념물보호상태를 정상적으로 관찰하여야 한다. 명승지, 천연기념물보호상태에 대한 관찰정형은 명승지, 천연기념물관리일지에 등록하여야 한다.	보체계) 민족유산보호기관은 명승지, 천연기념물에 대하여 정상적으로 관찰 및 기록하고 비정상적인 현상을 제때에 통보하는 체계를 세워야 한다.
제25조 (명승지, 천연기념물의 표식) 민족유산보호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명승지, 천연기념물에 표식주, 설명문판, 주의사항판, 안내도 같은 것을 만들어 설치하여야 한다. 해당 명승지, 천연기념물보호구역에는 경계표식과 필요한 울타리를 하여야 한다.	제54조 (표식주, 설명문판, 주의사항판, 안내도판의 설치) 민족유산보호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명승지, 천연기념물에 표식주, 설명문판. 주의 사항판, 안내도판 같은것을 규정대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26조 (명승지, 천연기념물보호구역의 시설관리) 민족유산보호기관과 해당 기관은 명승지, 천연기념물보호구역에 휴식장소, 참관시설 같은것을 꾸리고 깨끗이 거두어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명승지에 대한 참관 및 관광을 하는 경우 해당한 료금을 내야 한다.	-
제27조 (명승지, 천연기념물의 보호공사) 민족유산보호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명승지, 천연기념물을 보호하기 위한 제방공사, 옹벽공사, 모래잡이언제공사 같은 것을 하여야 한다.	-
제28조 (명승지, 천연기념물의 자연환경보존) 민족유산보호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명승지, 천연기념물의 자연환경을 원상대로 유지하며 천연기념물로 등록된 동식물은 원종을 보존하고 그 자원량이 줄어드는 종류는 증식시켜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명승지에 있는 자연바위에 글이나 표어같은것을 새기는 행위를 할수 없다. 명승지에 글이나 표어같은것을 반드시 새겨야 할 경우에는 다른곳에서 돌을 날라다가 새기며 그렇게 하는 경우에도 자연풍치에 손상을 주지 말아야 한다.	제51조 (명승지, 천연기념물의 자연환경보호) 민족유산보호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명승지, 천연기념물의 자연환경을 원상대로 유지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명승지, 천연기념물과 그 보호시설을 파손시키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	제53조 (자연피해방지) 민족유산보호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벼락과 큰물, 산불을 비롯한 자연재해로부터 명승지, 천연기념물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제29조 (산림자원의 보호) 민족유산보호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명승지, 천연기념물의 특성에 따라 보호구역안에 수종이 좋은 나무와 잔디 같은 것을 더 많이 심으며 산림병해충예찰체계와 산불감시체계를 세워 산림을 보호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명승지, 천연기념물보호구역에서 나무를 베거나 산림을 개간하거나 묘지를 쓰는것 같은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
제30조 (동식물자원의 보호) 민족유산보호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명승지, 천연기념물보호구역에서 동식물의 서식환경을	-

『명승지, 천연기념물보호법』 2011.12.21.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052호로 수정	『민족유산보호법』 2018.11.24.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477호로 수정보충
잘 보장해주며 동물전염병과 식물병해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역대책을 엄격히 세워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명승지, 천연기념물보호구역에서 동식물의 서식환경을 파괴하거나 희귀한 동식물을 잡거나 채취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필요에 따라 명승지, 천연기념물보호구역에서 동식물을 잡거나 채취하려 할 경우에는 중앙민족유산보호지도기관의 합의를 받는다.	
제31조 (명승지, 천연기념물보호구역에서 시설물의 건설) 명승지, 천연기념물보호구역에서 시설물을 건설하거나 명승지, 천연기념물보호사업과 관련이 없는 조사를 하려 할 경우에는 중앙민족유산보호지도기관의 승인을 받으며 시설물을 건설하거나 조사를 하면서 자연 및 생태환경을 손상시키거나 파괴하지 말아야 한다. 명승지, 천연기념물보호구역에서는 생산시설물을 건설하거나 지하자원을 개발할수 없다.	제55조 (명승지보호구역에서 참관 및 봉사시설의 건설, 개건보수)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명승지보호구역에서 참관 및 봉사와 관련한 시설물을 건설하거나 개건보수하려 할 경우 중앙민족유산보호지도기관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제32조 (지반침하의 방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명승지, 천연기념물보호구역에서 지하수의 리용과 지하구조물의 건설, 절토 또는 성토, 복구로 하여 지반이 침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지반이 침하될수 있는 곳에서는 지하수를 뽑아 쓸수 없다.	-
제33조 (명승지, 천연기념물보호구역에서 환경보호질서 준수)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명승지, 천연기념물보호구역에서 다음과 같이 환경보호질서위반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1. 정한 기준을 초과하여 배기가스를 내보내는 륜전기재를 운행하는 행위 2. 시설물의 건설, 운영과정에 정화하지 않은 오염물질을 내보내거나 악취를 발생시키거나 소음, 진동, 먼지를 일으키는 행위 3. 식당, 국수집 같은 것을 꾸려놓아 자연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 4. 화재를 일으킬수 있는 물건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 5. 총기류, 폭발물 같은것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 6. 고무, 비닐, 쓰레기 같은것을 불태우는 행위 7. 휴지, 담배꽁초, 오물같은것을 망탕 버리는 행위 8. 승인없이 동식물을 잡거나 채취하는 행위 9. 륜전기재를 청소하거나 오물을 버려 수역을 오염시키는 행위	-
제34조 (명승지, 천연기념물의 이상현상통보)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명승지, 천연기념물이 파손되였거나 기타 명승지, 천연기념물보호구역에서 비정상적인 현상을 발견하였을 경우 민족유산보호기	-

『명승지, 천연기념물보호법』 2011.12.21.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052호로 수정	『민족유산보호법』 2018.11.24.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477호로 수정보충
관 또는 해당 기관에 알려야 한다. 통보를 받은 기관은 즉시 현지에 나가 알아보고 해당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제35조 (천연기념물의 위치이동, 복원) 기관, 기업소, 단체는 천연기념물의 위치를 옮기거나 그것을 복원하려 할 경우 중앙민족유산보호지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36조 (천연기념물의 매매, 대외반출금지) 등록된 천연기념물은 팔고사거나 다른 나라로 내갈 수 없다. 전시회, 학술토론회 같은 목적으로 천연기념물을 다른 나라로 내가려 할 경우에는 중앙민족유산보호지도기관과 합의한 다음 내각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37조 (명승지, 천연기념물자료의 영구보존) 민족유산보호기관과 해당 기관은 명승지, 천연기념물의 자연상태자료, 력사유래자료, 관찰자료 같은것을 만들어 영구보존하여야 한다.	-

* 출처: 통일법제 데이터서비스(https://www.unilaw.go.kr)에서 원문 입수하여 연구자 비교 작성.

(2) 국제원칙에 입각한 민족유산 평가 기준 구체화

민족유산의 평가기준으로 '보호가치'가 새롭게 등장하는데, 가치에 기반한 심의 평가 기준이 마련되었음을 알 수 있다. '보호가치'는 해당 유산을 민족유산으로 등록하는데 가장 먼저 검토되어야 할 내용으로 해당 역사문화자원 및 자연자원이 유산으로서의 가치를 갖는지 판단하는 내용이 수반된다.

> 제25조 (민족유산의 심의평가신청)
> 신청서에는 민족유산의 명칭, 소재지, 력사적시기 및 유래, 현상태와 보호가치. 보존전망. 보존장소. 비물질유산인경우 그것을 보유하고있는자, 그와 련관된 수단과 도구 같은것을 구체적으로 밝히며 사진자료, 음성자료, 동영상자료, 위치지정도를 비롯하여 필요한 자료를 첨부한다.

세계유산의 구역설정과 관련된 조항 또한 변경되었다. 이전에는 핵심구역과 완충구역에 대해 명시하였지만, 2018년 개정안에서는 '력사유적보호구역'을 해당 국제협약에 따라 정한다고 하였다. 세계유산협약에 따르면 세계유산 등재 신청 시 '유산구역'과 '완충구역'을 설정하여 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의 경우, 목적에 따라 핵심지역, 완충지역, 전이지역으로 구분해야 한다. 2015년의 구법에서 언급하고 있는 세계유산 구역 구분은 '핵심구역'과 '완충구역'만 언급되어 세계

유산 제도의 ‘유산구역’나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의 ‘전이지역’은 담지 못한다. 북한에서 여러 종류의 국제보호지역을 등재하는 과정에서 보호구역의 개념이 혼재되었고, 이러한 혼란이 조항에 반영된 것으로 보이며, 2018년 개정법에서는 혼란을 야기하는 구체적인 구역명을 삭제하고, “해당 국제협약의 요구에 맞게” 정한다고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

제33조 (력사유적보호구역)
력사유적이 세계유산으로 등록된 경우에는 력사유적보호구역을 해당 국제협약의 요구에 맞게 정한다.

(3) 민족유산 분야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명문화

2018년 개정안의 제 40조에서는 역사유적유물에 대한 온습도, 조명 관리와 분실, 파손 등의 인명피해와 자연재해에 대한 방지대책수립에 관한 내용이다. 제3장 3절 ‘자연유산의 보호관리’에서도 ‘자연재해 방지 대책 수립’에 대한 내용이 등장한다.

제40조 (물질유산의 온습도 및 조명보장, 사고방지대책)
민족유산보호기관은 력사유적유물의 보호에 필요한 온습도와 조명을 규정대로 보장하며 분실, 화재, 파손, 벼락, 큰물을 비롯한 사고와 자연재해방지대책을 세워야 한다.

제53조 (자연피해방지)
민족유산보호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벼락과 큰물, 산불을 비롯한 자연재해로부터 명승지, 천연기념물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표 7.『문화유산보호법(2012)』,『민족유산보호법(2015)』,『민족유산보호법(2018)』의 조항 비교

구분	『문화유산보호법』 2012.8.7.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584호로 채택	구분	『민족유산보호법』 2015.6.10.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538호로 채택	구분	『민족유산보호법』 2018.11.24.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477호로 수정보충
전체 구성	6장 58조	전체 구성	6장 62조	전체 구성	6장 3절 73조
제1장 문화유산보호법의 기본	제1조 (문화유산보호법의 사명) 제2조 (문화유산의 정의) 제3조 (문화유산의 소유권) 제4조 (문화유산보호관리의 기본원칙) 제5조 (문화유산을 력사적사실과 현실에 맞게 복원하고 보호관리할데 대한 원칙) 제6조 (전국가적, 전사회적인 문화유산보호관리원칙) 제7조.(문화유산의 리용원칙) 저8조 (문화유산보호관리의 과학화원칙) 제9조 (문화유산보호관리분야의 교류와 협조)	제1장 민족유산보호법의 기본	제1조 (민족유산보호법의 사명) 제2조 (민족유산의 정의) 제3조 (민족유산의 소유권) 제4조 (민족유산보호사업의 기본원칙) 제5조 (민족유산보호사업에 대한 투자원칙) 제6조 (전국가적, 전인민적인 민족유산보호원칙) 제7조 (민족유산의 리용원칙) 제8조 (민족유산보호관리분야의 교류와 협조) 제9조 (민족유산보호법의 규제대상)	제1장 민족유산보호법의 기본	제1조 (민족유산보호법의 사명) 제2조 (민족유산의 정의) 제3조 (민족유산의 구분) 제4조 (민족유산의 소유권) 제5조 (민족유산보호의 기본원칙) 제6조 (민족유산의 전국가적, 전인민적보호원칙) 제7조 (민족유산의 리용원칙) 제8조 (민족유산보호사업에 대한 투자원칙) 제9조 (민족유산보호사업에서의 교류와 협조)
제2장 문화유산의 발굴과 수집	제10조(문화유산의 발굴, 수집의 계획화) 제11조 (문화유산의 발굴기관과 발굴승인) 제12조 (문화유산의 발굴방법) 제13조 (분화유산발굴자료 및 발굴한 문화유산의 이관) 제14조 (문화유산발견의 통보) 제15조 (문화유산의 수집) 제16조 (수매과정에 발견한 력사유물의	제2장 민족유산의 발굴과 수집	제10조 (민족유산발굴 및 수집의 계획화) 제11조 (민족유산의 발굴기관) 제12조 (민족유산의 발굴방법) 제13조 (민족유산발굴보고서제출, 발굴한 민족유산의 처리) 제14조 (민족유산발견의 통보) 제15조 (민족유산의 수집) 제16조 (수매 및 회수한 력사유물의 처	제2장 민족유산의 발굴과 복원	제10조 (민족유산의 계획적인 발굴) 제11조 (민족유산발굴에 대한 청원) 제12조 (민족유산의 발굴기관과 발굴절차) 제13조 (민족유산발굴에서 지켜야 할 요구) 제14조 (민족유산의 공동발굴) 제15조 (발견한 민족유산에 대한 통보) 제16조 (민족유산의 수집)

구분	『문화유산보호법』 2012.8.7.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584호로 채택	구분	『민족유산보호법』 2015.6.10.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538호로 채택	구분	『민족유산보호법』 2018.11.24.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477호로 수정보충
	처리)		리) 제17조 (민족유산보호를 위한 건설합의)		제17조 (수매 및 몰수한 력사유물의 처리) 제18조 (민족유산의 계획적인 복원) 제19조 (민족유산의 복원안작성) 제20조 (민족유산복원기관) 제21조 (력사유적의 복원설계) 제22조 (력사유적복원의 질과 준공검사)
제3장 문화유산의 평가와 등록	제17조 (문화유산의 의무적인 평가, 등록) 제18조 (문화유산의 심의평가위원회조직) 제19조 (문화유산의 평가신청) 제20조 (문화유산의 심의평가방법) 제21조 (문화유산의 등록) 제22조 (문화유산의 변동사항과 수복, 보수정형의 기록) 제23조 (문화유산의 이관, 명칭의 정정)	제3장 민족유산의 평가와 등록	제18조 (민족유산의 의무적인 평가, 등록) 제19조 (민족유산심의평가위원회의 조직) 제20조 (민족유산의 심의평가신청) 제21조 (민족유산의 심의평가방법) 제22조 (민족유산의 등록 및 폐기) 제23조 (민족유산의 변동사항과 수복, 보수정형의 기록) 제24조 (민족유산의 이관, 명칭의 정정) 제25조 (민족유산의 세계유산등록활동)	제3장 민족유산의 심의평가와 등록	제23조 (민족유산의 심의평가 및 등록요구) 제24조 (민족유산심의평가를 위한 비상설위원회의 조직) 제25조 (민족유산의 심의평가신청) 제26조 (민족유산의 평가방법) 제27조 (민족유산의 등록) 제28조 (민족유산의 삭제 및 폐기) 제29조 (민족유산명칭의 변경) 제30조 (민족유산의 세계유산등록)
제4장 문화유산의 보존관리	제24조 (문화유산의 과학기술적인 보존관리) 제25조 (문화유산보존관리의 담당자) 제26조 (력사유적보호구역) 제27조 (력사유적보호구역안의 시설물철	제4장 민족유산의 관리와 리용	제26조 (민족유산의 과학기술적인 관리) 제27조 (민족유산관리의 담당자) 제28조 (민족유산관리분담) 제29조 (민족유산애호월간) 제30조 (력사유적보호구역)	제4장 민족유산의 보호관리	**제1절 물질유산의 보호관리** 제31조 (물질유산보호관리의 담당자) 제32조 (력사유적관리의 분담) 제33조 (력사유적보호구역) 제34조 (력사유적보호구역의 정리)

구분	『문화유산보호법』 2012.8.7.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584호로 채택	구분	『민족유산보호법』 2015.6.10.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538호로 채택	구분	『민족유산보호법』 2018.11.24.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477호로 수정보충
	수) 제28조 (력사유적보호구역에서 금지행위) 제29조 (력사유적표식주, 설명문판의 설치) 제30조 (문화유산의 보수, 수복, 소독) 제31조 (문화유산보존에서 온도와 습도보장, 사고방지) 제32조 (력사유적의 리용) 제33조 (력사유적리용자의 의무) 제34조 (력사유물의 보관, 모조품의 리용) 제35조 (력사유적, 유물의 촬영, 벽화무덤의 참관) 제36조 (건설대상의 배치) 제37조 (문화유산의 매매, 대외반출금지) 제38조 (문화유산의 실측설계도면과 사진자료의 영구보관)		제31조 (력사유적보호구역안의 시설물철수) 제32조 (력사유적보호구역에서 금지사항) 제33조 (력사유적표식주, 설명문판의 설치) 제34조 (민족유산의 보수, 수복, 소독) 제35조 (민족유산보호에서 온도와 습도보장, 사고방지) 제36조 (력사유적의 이관) 제37조 (력사유적리용자의 의무) 제38조 (력사유물의 보관과 모조품의 리용) 제39조 (민족유산참관) 제40조 (력사교양거점에 대한 건설과 그 보존관리) 제41조 (민족유산과 력사교양거점을 통한 교양) 제42조 (비물질유산의 보호) 제43조 (비물질유산의 마크) 제44조 (민족유산의 매매, 대외반출 및 출판물제작)		제35조 (력사유적보호구역에서의 금지사항) 제36조 (력사유적의 원상보존) 제37조 (력사유적표식주, 설명문판, 주의사항판의 설치) 제38조 (력사유물의 보관, 진렬) 제39조 (력사유적유물의 보수, 수복, 소독) 제40조 (물질유산의 온습도 및 조명보장, 사고방지대책) **제2절 비물질유산의 보호관리** 제41조 (비물질유산보호관리의 담당자) 제42조 (비물질유산의 목록작성) 제43조 (비물질유산의 소실, 손상방지) 제44조 (비물질유산보유자에 대한 우대) 제45조 (비물질유산의 전수) 제46조 (비물질유산의 계승발전) 제47조 (비물질유산의 보급) **제3절 자연유산의 보호관리** 제48조 (자연유산보호관리의 담당자) 제49조 (자연유산관리의 분담) 제50조 (명승지, 천연기념물보호구역) 제51조 (명승지, 천연기념물의 자연환경보호)

구분	『문화유산보호법』 2012.8.7.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584호로 채택	구분	『민족유산보호법』 2015.6.10.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538호로 채택	구분	『민족유산보호법』 2018.11.24.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477호로 수정보충
					제52조 (명승지, 천연기념물에 대한 관찰, 기록, 통보체계) 제53조 (자연피해방지) 제54조 (표식주, 설명문판, 주의사항판, 안내도판의 설치) 제55조 (명승지보호구역에서 참관 및 봉사시설의 건설, 개건보수)
제5장 문화유산의 복원	제39조 (문화유산복원의 기본요구) 제40조 (문화유산의 형성안) 제41조 (문화유산의 복원설계) 제42조 (문화유산복원대상의 계획화) 제43조 (문화유산복원의 질과 준공검사) 제44조 (력사유적의 이설) 제45조 (문화유산의 복원기관)	제5장 민족유산의 복원	제45조 (민족유산복원의 기본요구) 제46조 (민족유산의 복원형성안) 제47조 (민족유산의 복원설계) 제48조 (민족유산복원대상의 계획화) 제49조 (민족유산의 복원기관) 제50조 (민족유산복원의 질과 준공검사) 제51조 (력사유적의 이설)	제5장 민족유산의 리용	제56조 (력사유적의 이관) 제57조 (민족유산에 대한 참관) 제58조 (력사교양거점에 대한 건설과 그 관리) 제59조 (민족유산과 력사교양거점을 통한 교양) 제60조 (력사유적유물과 민속전통에 대한 소개선전) 제61조 (비물질유산의 마크리용) 제62조 (민족유산의 매매, 대외반출금지)
제6장 문화유산보호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제46조 (문화유산보호사업에 대한 지도통제의 강화) 제47조 (문화유산보호사업에 대한 통일적지도) 제48조 (문화유산보존관리분담) 제49조 (박물관, 력사교양마당, 민속공원	제6장 민족유산보호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제52조 (민족유산보호사업에 대한 지도통제의 강화) 제53조 (민족유산보호사업에 대한 통일적지도) 제54조 (비상설민족유산보호위원회의 조직운영)	제6장 민족유산보호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제63조 (민족유산보호사업에 대한 지도) 제64조 (비상설민족유산보호위원회의 조직운영) 제65조 (민족유산애호월간) 제66조 (민족유산보호사업의 조건보장) 제67조 (민족유산보호부문의 과학연구조

구분	『문화유산보호법』 2012.8.7.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584호로 채택	구분	『민족유산보호법』 2015.6.10.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538호로 채택	구분	『민족유산보호법』 2018.11.24.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477호로 수정보충
	의 건설) 제50조 (문화유산보호사업의 조건보장) 제51조 (문화유산보호부문의 과학연구조건보장, 성과도입) 제52조 (문화유산을 통한 교양) 제53조 (문화유산애호월간) 제54조 (비상설문화유산보존위원회의 조직운영) 제55조 (문화유산보호사업에 대한 감독통제) 제56조 (원상복구, 손해보상) 제57조 (행정적책임) 제58조 (형사적책임)		제55조 (민족유산보호사업의 조건보장) 제56조 (민족유산보호부문의 과학연구조건보장, 성과도입) 제57조 (민족유산보존사의 조직운영) 제58조 (종합적인 자료기지화) 제59조 (민족유산보호사업에 대한 감독통제) 제60조 (원상복구, 손해보상) 제61조 (행정적책임) 제62조 (형사적책임)		건보장, 성과도입) 제68조 (민족유산보존사의 조직운영) 제69조 (종합적인 자료기지화) 제70조 (민족유산보호사업에 대한 감독통제) 제71조 (원상복구, 손해보상) 제72조 (행정적책임) 제73조 (형사적책임)

* 출처: 통일법제 데이터서비스(https://www.unilaw.go.kr)에서 원문 입수하여 연구자 비교 작성

3) 『명승지, 천연기념물보호법』의 개정

『명승지, 천연기념물보호법』은 1995년 12월 13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64호로 채택된 이래로 6차례에 걸쳐 수정, 수정보충되었다. 심지어 2011년 12월 21일은 김정일이 사망한 지 4일째인 북한의 '국상' 기간이었다. 김정일의 사망에도 불구하고 법령을 개정한 것은 해당 정책을 변함없이 추진하고자 하는 김정은의 의지를 보여준다.[33] 김정은 시기에는 2011년 개정 이후 2016년 3월 24일, 2018년 12월 19일, 2021년 6월 27일 추가로 수정보충되었다. 2016년 개정안은 2014년 김정은 담화 이후로 첫 개정이기 때문에 담화문에 기반한 내용이 담겼을 것으로 보이나 원문 입수가 어려워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다.

2014년 담화문에서 민족유산보호지도기관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2016년 개정안에서는 기존의 '명승지, 천연기념물 보호지도기관'이 '민족유산보호기관'으로 수정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2019년 개정은 2018년 11월 24일 『민족유산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있는 내용이 포함됐을 것으로 보인다. 법령 전문은 2011년과 2021년 개정안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두 개의 법령을 토대로 비교해볼 수 있다. <표 8>는 남한에 입수된 2011년과 2021년 수정안을 비교한 것이다.

2021년 개정법이 2011년 개정법과 비교하여 달라진 점 중 특기할만한 점은 제2조의 (명승지, 천연기념물보호법과 그 종류)에서 천연기념물의 유형 중 '자연로두'가 추가되었다는 것이며, 요금과 벌금에 대한 내용이 새로 등장한다는 점이다. 2011년 개정안에서는 제44조(중지처벌)에 해당하는 내용 중 일부를 위반할 시 '행정적 책임'을 묻고, 만일 그 행위가 범죄에 이를 경우에는 동법 제43조와 형법의 해당 조문에 따라 형사적 책임을 지운다고 했다. 하지만, 2021년 개정법에서는 제43조(벌금처벌)이 낮은 단계로 제시되며, 구체적으로 벌금을 명시한 벌금처벌, 중지처벌, 그리고 경고, 무보수로동, 로동교양, 강직, 해임, 철직처벌 등의 강도 높은 처벌을 명시하고 있다.

> 제26조 (명승지, 천연기념물보호구역의 시설관리)
> 민족유산보호기관과 해당 기관은 명승지, 천연기념물보호구역에 휴식장소, 참관시설 같은것을 꾸리고 깨끗이 거두어야 한다.
>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명승지에 대한 참관 및 관광을 하는 경우 해당한 료금을 내야 한다.

33) 이때 개정된 법령으로는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 세금법, 외국투자은행법, 외국인투자기업파산법, 외국투자기업등록법, 외국인투자기업재정관리법, 외국인투자기업회계법, 외국인투자기업노동법 등이 있다. 출처 : 정성장, "김정은 시대 북한의 입법 및 국가대표기구 연구: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역할과 엘리트를 중심으로," 『KDI 북한경제리뷰』, 제 19권 5호, (2014), p. 10.

제43조 (벌금처벌)
이 법 제33조에서 정한 환경보호질서위반행위를 하였을 경우 정상에 따라 기관, 기업소, 단체에는 10만~150만원, 공민에게는 1,000~10만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44조 (중지처벌)
다음의 경우에는 중지처벌을 준다.
1. 시설물을 건설하거나 명승지, 천연기념물보호사업과 관련이 없는 조사를 하는 경우
2. 승인없이 천연기념물의 위치를 옮기거나 그것을 복원하는것과 같은 행위를 하는 경우
3. 지반이 침하될수 있는 곳에서 지하수를 뽑아 쓰는 경우
4. 시설물의 건설, 운영과정에 오염물질을 배출하여 생태환경을 파괴시키는 경우

제45조 (경고, 무보수로동, 로동교양, 강직, 해임, 철직처벌)
다음의 경우에는 책임있는 자에게 경고, 엄중경고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1. 명승지, 천연기념물 또는 그 보호시설을 파손시켰을 경우
2. 폐기폐설물의 배출로 명승지, 천연기념물의 생태환경을 파괴하였을 경우
3. 명승지에서 산불을 일으켰거나 산림을 람벌하였을 경우

또한 자연유산의 주변환경을 엄격하게 보존관리하기 위해 보호구역 내 행위 제한이 강화되며 관련 조문이 추가되었는데, 대표적인 것은 자연바위에 글이나 표어 새기는 것을 금지한다는 내용이다. '자연글발' 사업은 혁명전통 교양의 대표적인 사업 중 하나로 『조선중앙년감』의 '혁명전통'에 김일성, 김정일 동상이나 모자이크벽화 등과 함께 소개되었다. 이 조문에서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이 새기는 표어 등의 글귀를 금지한다며, 글발을 새기는 주체에 당이 포함되고 있지 않지만, 이후 '자연글발' 관련 내용이 『조선중앙년감』이나 언론에 등장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당에서도 대규모 자연글발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제28조 (명승지, 천연기념물의 자연환경보존)
민족유산보호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명승지, 천연기념물의 자연환경을 원상대로 유지하며 천연기념물로 등록된 동식물은 원종을 보존하고 그 자원량이 줄어드는 종류는 증식시켜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명승지에 있는 자연바위에 글이나 표어같은것을 새기는 행위를 할수 없다.
명승지에 글이나 표어같은것을 반드시 새겨야 할 경우에는 다른곳에서 돌을 날라다가 새기며 그렇게 하는 경우에도 자연풍치에 손상을 주지 말아야 한다.

표 8. 2011년과 2021년 수정된 『명승지, 천연기념물보호법』의 주요 내용 비교

	『명승지, 천연기념물보호법』 2011.12.21.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052호로 수정	『명승지, 천연기념물보호법』 2021.6.27.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631호로 수정보충
전체 구성	4장 44조	4장 46조
제1장 명승지, 천연기념물보호법의 기본	제2조(명승지, 천연기념물과 그 종류) 명승지에는 이름난 산과 호수, 폭포, 계곡, 동굴, 바다가, 섬 같은 지역이, 천연기념물에는 특이한 동식물, 화석, 자연바위, 광천 같은 자연물이 속한다.	제2조(명승지, 천연기념물과 그 종류) 명승지에는 이름난 산과 호수, 폭포, 계곡, 동굴, 바다가, 섬 같은 지역이, 천연기념물에는 특이한 동식물, 화석, 자연바위, 광천, 자연로두 같은 자연물이 속한다.
	제3조(명승지, 천연기념물을 통한 교양사업 강화원칙) 국가는 명승지, 천연기념물에 대한 참관사업을 널리 조직하여 근로자들과 자라나는 새 세대들에게 아름다운 삼천리금수강산에서 산다는 크나큰 민족적긍지와 자부심, 나라를 귀중히 여기며 더 잘 꾸리고 빛내여나가겠다는 열렬한 애국심을 키워주도록 한다.	제3조(명승지, 천연기념물을 통한 교양사업 강화원칙) 국가는 명승지, 천연기념물에 대한 소개선전사업과 참관사업을 널리 조직하여 근로자들과 자라나는 새 세대에게 아름다운 삼천리금수강산에서 산다는 크나큰 민족적긍지와 자부심, 나라를 귀중히 여기며 더 잘 꾸리고 빛내여나가겠다는 열렬한 애국심을 키워주도록 한다.
제2장 명승지, 천연기념물의 조사, 등록	제9조 (명승지, 천연기념물의 조사기관) 명승지, 천연기념물의 조사는 명승지, 천연기념물보호지도기관이 한다.	제9조 (명승지, 천연기념물의 조사기관) 명승지, 천연기념물의 조사는 민족유산보호기관이 한다.
	제10조(명승지, 천연기념물의 조사방법) 명승지, 천연기념물보호지도기관과 해당 전문기관은 필요한 수단을 갖추고 명승지,	제10조 (명승지, 천연기념물의 조사방법) 민족유산보호기관과 해당 전문기관은 필요한 수단을 갖추고 명승지, 천연기념물에 대한 조사를 구체적으로 하여야 한다.
	제12조(명승지, 천연기념물의 통보)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명승지, 천연기념물로 인정되는 대상을 발견하면 명승지, 천연기념물보호지도기관 또는 해당 전문기관에 알려야 한다.	제12조 (명승지, 천연기념물의 통보)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명승지, 천연기념물로 인정되는 대상을 발견하면 민족유산보호기관이나 해당 기관에 알려야 한다.
	제13조(명승지, 천연기념물의 심의평가위원회조직) 명승지, 천연기념물은 중앙명승지, 천연기념물보호지도기관에서 심의평가하고 내각의 승인을 받아 등록하여야 한	제13조 (명승지, 천연기념물의 심의평가위원회조직) 명승지, 천연기념물은 중앙민족유산보호지도기관의 심의평가를 받아야 한다.

	『명승지, 천연기념물보호법』 2011.12.21.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052호로 수정	『명승지, 천연기념물보호법』 2021.6.27.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631호로 수정보충
	다. 명승지, 천연기념물에 대한 심의평가를 위하여 중앙명승지, 천연기념물보호지도기관에 비상설명승지, 천연기념물심의평가위원회를 둔다.	중앙민족유산보호지도기관은 명승지, 천연기념물에 대한 심의평가를 위하여 비상설자연유산심의평가위원회를 조직한다.
	제14조(명승지, 천연기념물의 등록신청) 명승지, 천연기념물을 등록하려는 기관은 명승지, 천연기념물등록신청서를 만들어 중앙명승지, 천연기념물보호지도기관에 내야 한다.	제14조 (명승지, 천연기념물의 등록신청) 명승지, 천연기념물을 등록하려는 기관은 명승지, 천연기념물등록신청서를 만들어 중앙민족유산보호지도기관에 내야 한다.
	제15조(명승지, 천연기념물의 심의평가방법) 명승지, 천연기념물등록신청을 받은 중앙명승지, 천연기념물보호지도기관은 비상설명승지, 천연기념물심의평가위원회를 열고 해당 대상의 력사적유래, 특성, 보존가치 같은것에 대하여 정확히 심의평가하여야 한다.	제15조 (명승지, 천연기념물의 심의평가방법) 명승지, 천연기념물등록신청을 받은 중앙민족유산보호지도기관은 비상설자연유산심의평가위원회를 열고 해당 대상의 력사적유래, 지질학적 및 생태학적특성, 보존가치 같은것에 대하여 정확히 심의평가하여야 한다.
	제19조(명승지, 천연기념물의 삭제절차) 등록된 명승지, 천연기념물을 삭제하려는 기관은 명승지, 천연기념물삭제신청서를 만들어 중앙명승지, 천연기념물보호지도기관에 내야 한다. 중앙명승지, 천연기념물보호지도기관은 비상설명승지, 천연기념물심의평가위원회를 열고 신청문건을 정확히 검토하며 내각의 승인을 받아 해당 명승지, 천연기념물을 등록에서 삭제하여야 한다.	제19조 (명승지, 천연기념물의 삭제절차) 등록된 명승지, 천연기념물을 삭제하려는 기관은 명승지, 천연기념물삭제신청서를 만들어 중앙민족유산보호지도기관에 내야 한다. 중앙민족유산보호지도기관은 비상설자연유산심의평가위원회를 열고 신청문건을 정확히 검토하며 내각의 승인을 받아 해당 명승지, 천연기념물을 등록에서 삭제하여야 한다.
제3장 명승지, 천연기념물관리	제20조(명승지, 천연기념물관리체계확립) 명승지, 천연기념물관리기관은 명승지, 천연기념물관리체계를 세우고 그 관리	제20조 (명승지, 천연기념물관리체계확립) 민족유산보호기관은 명승지, 천연기념물관리체계를 세우고 그 관리를 과학

	『명승지, 천연기념물보호법』 2011.12.21.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052호로 수정	『명승지, 천연기념물보호법』 2021.6.27.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631호로 수정보충
	를 과학기술적으로 하여야 한다.	기술적으로 하여야 한다.
	제21조(명승지, 천연기념물의 관리기관) 명승지, 천연기념물의 관리는 명승지, 천연기념물관리기관과 그 관리를 분담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가 한다.	제21조 (명승지, 천연기념물의 관리기관) 명승지, 천연기념물의 관리는 민족유산보호기관과 그 관리를 분담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가 한다.
	제22조(명승지, 천연기념물의 관리분담) 명승지, 천연기념물보호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명승지, 천연기념물의 관리분담을 바로 조직하고 그 관리정형을 정상적으로 장악하며 해당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분담받은 명승지, 천연기념물을 책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22조 (명승지, 천연기념물의 관리분담) 해당 인민위원회는 기관, 기업소, 단체에 명승지, 천연기념물의 관리를 정확히 분담해주어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분담받은 명승지, 천연기념물의 관리를 정상적으로 하며 국토관리총동원기간에는 집중적으로 하여야 한다.
	제23조(명승지, 천연기념물보호구역) 국가는 명승지, 천연기념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호구역을 정한다. 명승지, 천연기념물보호구역을 정하는 사업은 내각이 한다.	제23조 (명승지, 천연기념물보호구역) 국가는 명승지, 천연기념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호구역을 정한다. 명승지, 천연기념물보호구역은 중앙민족유산보호지도기관이 해당 중앙기관과 합의하고 내각 또는 비상설자원개발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명승지, 천연기념물보호구역은 명승지, 천연기념물보존관리기준에 맞게 정하여야 한다.
	제25조(명승지, 천연기념물의 표식) 명승지, 천연기념물관리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명승지, 천연기념물에 표식주, 설명문판, 주의사항판, 안내도 같은것을 만들어 세워야 한다.	제25조 (명승지, 천연기념물의 표식) 민족유산보호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명승지, 천연기념물에 표식주, 설명문판, 주의사항판, 안내도 같은 것을 만들어 설치하여야 한다.
	제26조(명승지, 천연기념물보호구역의 시설관리) 명승지, 천연기념물관리기관과 해당 기관은 명승지, 천연기념물보호구역에 휴식장소, 참관시설 같은것을 꾸리고	제26조 (명승지, 천연기념물보호구역의 시설관리) 민족유산보호기관과 해당 기관은 명승지, 천연기념물보호구역에 휴식장소, 참관시설 같은것을 꾸리고 깨끗이 거

	『명승지, 천연기념물보호법』 2011.12.21.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052호로 수정	『명승지, 천연기념물보호법』 2021.6.27.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631호로 수정보충
	깨끗이 거두며 명승지, 천연기념물에 대한 소개선전을 하여야 한다.	두어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명승지에 대한 참관 및 관광을 하는 경우 해당한 료금을 내야 한다.
	제27조(명승지, 천연기념물의 보호공사) 명승지, 천연기념물관리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명승지, 천연기념물을 보호하기 위한 제방공사, 옹벽공사, 모래잡이언제공사 같은것을 하여야 한다.	제27조 (명승지, 천연기념물의 보호공사) 민족유산보호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명승지, 천연기념물을 보호하기 위한 제방공사, 옹벽공사, 모래잡이언제공사 같은 것을 하여야 한다.
	제28조(명승지, 천연기념물의 자연환경보존) 명승지, 천연기념물관리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명승지, 천연기념물의 자연환경을 원상대로 유지하여야 한다.	제28조 (명승지, 천연기념물의 자연환경보존) 민족유산보호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명승지, 천연기념물의 자연환경을 원상대로 유지하며 천연기념물로 등록된 동식물은 원종을 보존하고 그 자원량이 줄어드는 종류는 증식시켜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명승지에 있는 자연바위에 글이나 표어같은것을 새기는 행위를 할수 없다. 명승지에 글이나 표어같은것을 반드시 새겨야 할 경우에는 다른곳에서 돌을 날라다가 새기며 그렇게 하는 경우에도 자연풍치에 손상을 주지 말아야 한다.
	제29조(산림자원의 보호) 명승지, 천연기념물관리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명승지, 천연기념물의 특성에 따라 보호구역안에 수종이 좋은 나무와 잔디 같은것을 더 많이 심으며 산림병해충예찰체계와 산불감시체계를 세워 산림을 보호하여야 한다.	제29조 (산림자원의 보호) 민족유산보호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명승지, 천연기념물의 특성에 따라 보호구역안에 수종이 좋은 나무와 잔디 같은 것을 더 많이 심으며 산림병해충예찰체계와 산불감시체계를 세워 산림을 보호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명승지, 천연기념물보호구역에서 나무를 베거나 산림을 개간하거나 묘지를 쓰는것

	『명승지, 천연기념물보호법』 2011.12.21.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052호로 수정	『명승지, 천연기념물보호법』 2021.6.27.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631호로 수정보충
		같은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제30조(동식물자원의 보호) 명승지, 천연기념물관리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명승지, 천연기념물보호구역에서 동식물의 서식환경을 잘 보장해주며 동물전염병과 식물병해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역대책을 엄격히 세워야 한다.	제30조 (동식물자원의 보호) 민족유산보호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명승지, 천연기념물보호구역에서 동식물의 서식환경을 잘 보장해주며 동물전염병과 식물병해충이 발생하지않도록 방역대책을 엄격히 세워야 한다. 필요에 따라 명승지, 천연기념물보호구역에서 동식물을 잡거나 채취하려 할 경우에는 중앙민족유산보호지도기관의 합의를 받는다.
	제31조(명승지, 천연기념물보호구역에서 시설물의 건설) 명승지, 천연기념물보호구역에서 시설물을 건설하려 할 경우에는 명승지, 천연기념물보호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명승지, 천연기념물보호구역에서는 생산시설물을 건설하거나 탄광, 광산을 개발할수 없다.	제31조 (명승지, 천연기념물보호구역에서 시설물의 건설) 명승지, 천연기념물보호구역에서 시설물을 건설하거나 명승지, 천연기념물보호사업과 관련이 없는 조사를 하려 할 경우에는 중앙민족유산보호지도기관의 승인을 받으며 시설물을 건설하거나 조사를 하면서 자연 및 생태환경을 손상시키거나 파괴하지 말아야 한다. 명승지, 천연기념물보호구역에서는 생산시설물을 건설하거나 지하자원을 개발할수 없다.
	제34조(명승지, 천연기념물의 이상현상통보)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명승지, 천연기념물에 파손되였거나 기타 명승지, 천연기념물보호구역에서 비정상적인 현상을 발견하였을 경우 명승지, 천연기념물관리기관 또는 해당 기관에 알려야 한다.	제34조 (명승지, 천연기념물의 이상현상통보)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명승지, 천연기념물이 파손되였거나 기타 명승지, 천연기념물보호구역에서 비정상적인 현상을 발견하였을 경우 민족유산보호기관 또는 해당 기관에 알려야 한다.
	제35조(천연기념물의 위치이동, 복원) 기관, 기업소, 단체는 천연기념물의 위치를 옮기거나 그것을 복원하려 할 경우 중앙명승지, 천연기념물보호지도기	제35조 (천연기념물의 위치이동, 복원) 기관, 기업소, 단체는 천연기념물의 위치를 옮기거나 그것을 복원하려 할 경

	『명승지, 천연기념물보호법』 2011.12.21.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052호로 수정	『명승지, 천연기념물보호법』 2021.6.27.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631호로 수정보충
	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우 중앙민족유산보호지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6조(천연기념물의 매매, 대외반출금지) 등록된 천연기념물은 팔고사거나 다른 나라로 내갈수 없다. 전시회, 학술토론회 같은 목적으로 천연기념물을 다른 나라로 내가려 할 경우에는 내각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6조 (천연기념물의 매매, 대외반출금지) 등록된 천연기념물은 팔고사거나 다른 나라로 내갈수 없다. 전시회, 학술토론회 같은 목적으로 천연기념물을 다른 나라로 내가려 할 경우에는 중앙민족유산보호지도기관과 합의한 다음 내각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7조(명승지, 천연기념물자료의 영구보존) 명승지, 천연기념물보호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명승지, 천연기념물의 자연상태자료, 력사유래자료, 관찰자료 같은것을 만들어 영구보존하여야 한다.	제37조 (명승지, 천연기념물자료의 영구보존) 민족유산보호기관과 해당 기관은 명승지, 천연기념물의 자연상태자료, 력사유래자료, 관찰자료 같은것을 만들어 영구보존하여야 한다.
제4장 명승지, 천연기념물보호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제39조(명승지, 천연기념물보호사업지도기관) 명승지, 천연기념물보호사업에 대한 통일적인 지도는 내각의 지도밑에 중앙명승지, 천연기념물보호지도기관이 한다. 중앙명승지, 천연기념물보호지도기관은 전국의 명승지, 천연기념물보호사업을 정상적으로 장악하고 지도하여야 한다.	제39조 (명승지, 천연기념물보호사업지도기관) 명승지, 천연기념물보호사업에 대한 통일적인 지도는 내각의 지도밑에 중앙민족유산보호지도기관이 한다. 중앙민족유산보호지도기관은 전국의 명승지, 천연기념물보호사업을 정상적으로 장악하고 지도하여야 한다.
	제41조(명승지, 천연기념물보호부문의 과학연구사업) 내각과 해당 기관은 명승지, 천연기념물보호부문의 과학연구기지를 튼튼히 꾸리고 연구조건을 보장하여주어야 한다. 해당 과학연구기관과 명승지, 천연기념물보호지도기관은 과학연구사업에서 이룩한 성과를 명승지, 천연기념물보호사업에 적극 받아들여야 한다.	제41조 (명승지, 천연기념물보호부문의 과학연구사업) 내각과 해당 기관은 명승지, 천연기념물보호부문의 과학연구기지를 튼튼히 꾸리고 연구조건을 보장하여주어야 한다. 해당 과학연구기관과 명승지, 천연기념물보호지도기관은 과학연구사업에서 이룩한 성과를 명승지, 천연기념물보호에 적극 받아들여야 한다.

	『명승지, 천연기념물보호법』 2011.12.21.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052호로 수정	『명승지, 천연기념물보호법』 2021.6.27.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631호로 수정보충
	제42조(명승지, 천연기념물보호사업에 대한 감독통제) 명승지, 천연기념물보호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명승지, 천연기념물보호감독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명승지, 천연기념물보호감독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국가의 명승지, 천연기념물보호정책집행정형에 대한 감독통제를 엄격히 하여야 한다.	제42조 (명승지, 천연기념물보호사업에 대한 감독통제) 명승지, 천연기념물보호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민족유산보호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민족유산보호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국가의 명승지, 천연기념물보호정책집행정형에 대한 감독통제를 엄격히 하여야 한다.
	제43조(행정적책임) 다음의 경우에는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 정상에 따라 해당한 행정처벌을 준다. 1. 명승지, 천연기념물 또는 그 보호시설을 파손시켰을 경우 2. 명승지, 천연기념물보호구역에서 생산시설물을 건설하거나 탄광, 광산을 개발할 경우 3. 명승지, 천연기념물보호구역에서 승인없이 나무를 베거나 산림을 개간하는것 같은 행위를 하였을 경우 4. 명승지, 천연기념물보호구역에서 동식물의 서식환경을 파괴하거나 희귀한 동식물을 잡거나 채취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5. 지하수의 리용과 지하구조물의 건설, 절토 또는 성토, 복구를 망탕하여 지반이 침하될수 있는 위험을 조성하였을 경우 6. 제방공사, 옹벽공사, 모래잡이언제공사 같은것을 제대로 하지 않아 명승지, 천연기념물보호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7. 제33조의 행위를 하였을 경우 8. 승인없이 천연기념물의 위치를 옮기거나 그것을 복원하는것 같은 행위를 하였을 경우	제43조 (벌금처벌) 이 법 제33조에서 정한 환경보호질서 위반행위를 하였을 경우 정상에 따라 기관, 기업소, 단체에는 10만~150만원, 공민에게는 1,000~10만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44조 (중지처벌) 다음의 경우에는 중지처벌을 준다. 1. 시설물을 건설하거나 명승지, 천연기념물보호사업과 관련이 없는 조사를 하는 경우 2. 승인없이 천연기념물의 위치를 옮기거나 그것을 복원하는것과 같은 행위를 하는 경우 3. 지반이 침하될수 있는 곳에서 지하수를 뽑아 쓰는 경우 4. 시설물의 건설, 운영과정에 오염물질을 배출하여 생태환경을 파괴시키는 경우 제45조 (경고, 무보수로동, 로동교양, 강직, 해임, 철직처벌) 다음의 경우에는 책임있는 자에게 경고, 엄중경고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1. 명승지, 천연기념물 또는 그 보호시설을 파손시켰을 경우

	『명승지, 천연기념물보호법』 2011.12.21.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052호로 수정	『명승지, 천연기념물보호법』 2021.6.27.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631호로 수정보충
	9. 등록된 천연기념물을 팔고샀거나 승인없이 다른 나라로 내갔을 경우 제44조(형사적 책임) 제43조의 행위가 범죄에 이를 경우에는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 형법의 해당 조문에 따라 형사적책임을 지운다.	2. 페기페설물의 배출로 명승지, 천연기념물의 생태환경을 파괴하였을 경우 3. 명승지에서 산불을 일으켰거나 산림을 람벌하였을 경우

* 출처: 통일법제 데이터서비스(https://www.unilaw.go.kr)에서 원문 입수하여 연구자 비교 작성, 청서는 2021년에 수정된 내용을, 적서는 2021년에 새로 추가된 내용을, 녹서는 2021년에 삭제된 내용을 연구자가 표시한 것임.

2. 김정은 시기 자연유산 지정 현황

김정은 시기의 국가지정 자연유산에 대한 정보는 김정일 시기부터 자연유산 관련 시각자료와 정보를 총망라하여 2017년 발간된 『조선의 자연유산』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조선의 자연유산』에는 『조선명승지도감』과 『조선천연기념물도감』으로 구분되며, 각 6권, 4권으로 구성되어 자연유산의 위치, 규모, 특성에 대해 자세히 서술하였다. 2017년 발간되어 2020년 전자자료화된 후 남한에 입수되었다. 2017년부터 2023년까지의 신규지정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연속간행물 『민족유산』과 언론자료를 참고하였다.

1) 『조선의 자연유산』을 통해 본 자연유산 지정 현황

(1) 명승지

『조선명승지도감』에 명시된 유형별 명승지 현황을 살펴보면, 명산 28개, 바닷가 14개, 호수 15개, 섬 3개, 온천 3개, 폭포 3개, 지하 2개로 총 68개의 명승지가 소개되었다. 이 중 명산이 28개로 가장 높은 수치이다. 도감에서는 28개의 명산을 그 특성과 분포에 따라 6권으로 구분하여 소개하고 있다. 『조선명승지도감』의 권별로 소개된 자연유산을 정리하면 <표 9>와 같다.

표 9. 『조선의 자연유산』의 유형별 자연유산 현황

유형		개소	내용	출처
명승지	명산	28	만경대, 백두산밀영, 백두산, 묘향산, 장자산, 동흥산, 대성산, 금강산, 모란봉, 룡악산, 광명, 구월산, 봉화산, 수양산, 삭주거문산, 신양금강, 신평금강, 칠보산, 백운산, 약산동대, 의주통군정, 삼부연, 정방산, 옥련산, 장수산, 경암산, 우산장, 석담구곡	1 ~ 6권
	바다가	14	송도원, 명사십리, 총석정, 집삼, 마전, 송단, 속후, 학사대, 기암, 서해갑문, 몽금포, 룡수포, 장산곶, 철산장송	7권
	호수	15	삼지연, 삼일포, 시중호, 동정호, 장연호, 연풍호, 수풍호, 태성호, 석암, 은파호, 서흥호, 부전호, 연탄호, 구암호, 송흥	8권
	섬, 온천, 폭포	9	릉라도, 비파도, 와우도, 경성상온포, 경성하온포, 김책세천, 울림폭포, 박연폭포, 동림폭포	9권
	지하	2	송암동굴, 룡문대굴	10권
	합계	68	-	-
천연기념물**	식물1	60	은행나무류(19), 바늘잎나무류(41)	1권
	식물2	95	두싹잎식물류(87), 한싹잎식물류(8)	2권
	동물	69	무척추동물(4), 척추동물(65),	3권

	지리	46	기묘한 바위(16), 담소(3), 동굴(4), 바다가명소(6), 지형체(7), 폭포(6), 호수(4)	4권
	지질	58	광물 및 암석(3), 광체로두(8), 약수(11), 온천(11), 지질구조(8), 화석(17)	5권
	합계	328	-	-

*출처: 김서린·성종상(2021, 80)에 천연기념물을 추가 작성

**북한에 위치한 천연기념물만 계산했음

표 10. 『조선의 자연유산』의 천연기념물 현황(갯수)

구분		식물	동물	지리	지질	총합계
북한	평양시	12	2	-	6	20
	개성시	13	1	1	-	15
	남포시	3	3	-	3	9
	라선시	2	1	-	-	3
	강원도	28	7	13	6	54
	량강도	8	12	4	2	26
	자강도	12	3	1	2	18
	평안남도	10	6	1	4	21
	평안북도	12	10	6	5	33
	함경남도	16	6	7	5	34
	함경북도	14	8	9	11	42
	황해남도	15	8	3	9	35
	황해북도	10	3	2	5	20
	합계	155	70	47	58	330
남한	서울시	8	-	-	-	8
	부산시	3	-	-	-	3
	대구시	1	-	-	-	1
	울산시	1	-	-	-	1
	인천시	3	1	2		6
	강원도	5	5	1	-	11
	경기도	6	3	-	-	9
	경상남도	8	4	1	1	14
	경상북도	21	3	1	2	27
	전라남도	15	6	-	-	21
	전라북도	17	-	-	1	18
	충청남도	7	-	-	-	7
	충청북도	11	2	-	-	13
	제주도	6	3	1		10
	합계	112	27	6	4	149
총합계		267	97	53	62	479

(2) 천연기념물

『조선명승지도감』의 본문에서는 북한 지역에 위치한 명승지를 소개하고 있지만,

『조선천연기념물도감』에서는 남한에 위치한 천연기념물을 함께 소개하고 있다. 북한 지역에 위치한 천연기념물을 총합하면 328개이며, 도감에서 소개하고 있는 남한의 천연기념물까지 포함하면 모두 479개이다[34].

북한의 『조선천연기념물도감』에서 소개하는 남한의 천연기념물은 현재 지정 현황과 상이한 점이 있다. 예컨대, 『조선천연기념물도감』에 수록된 남한의 천연기념물 중 4개는 고사(枯死)나 생육 상태 불량 등의 이유로 천연기념물 지정 해제된 것이다. 또한 천연기념물 동물 부문에서 독도의 경우에는 '독도바다새번식지'로 소개하고 있으나, 1982년 11월 20일 지정 당시의 명칭인 '독도 해조류 번식지'를 옮긴 것으로, 독도는 1999년 12월 "독도 천연보호구역"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나 반영되지 않았다. 남한의 천연기념물도 북한 것과 마찬가지로 사진자료와 함께 소개글을 싣고 있는데, 천연기념물 주변 안내판이나 펜스같은 시설물의 노후도와 디자인 등이 현황과는 사뭇 다른 모습인 것을 알 수 있다. 북한에서도 한국 천연기념물의 현황에 대해 의식하고 있지만, 최근 자료가 입수되지 않아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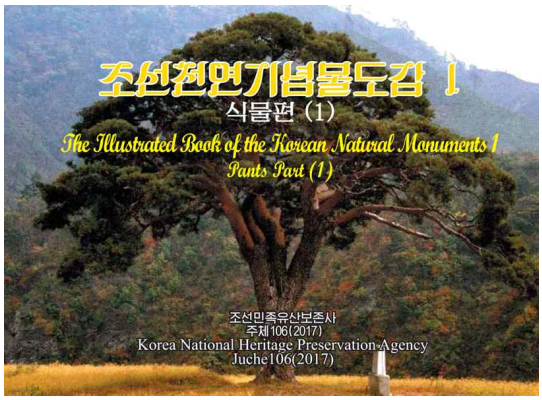
34) '원효로흰소나무'과 '보은흰소나무'는 1962년 지정되었지만, 고사(枯死)하여 각각 2003년, 2005년 8월 19일 해제되었다. '익산신작리곰솔'은 1967년 지정되었지만, 2008년 12월 15일 해제되었으며, '용주사회양나무'는 1979년 지정되었지만, 생육상태가 불량하여 2002년 6월 29일 해제되었다. 그밖에 지정해제된 천연기념물로는 '통영도선리백로, 왜가리번식지'가 있다. '통영도선리백로, 왜가리번식지'는 1970.11.05. 지정되었지만, 2009.12.18. 해제되었다. 출처 : 『국가문화유산포털』, 〈https://www.heritage.go.kr/〉(검색일: 2023.11.22.)



a.『조선의 자연유산: 명승지, 천연기념물』의 표지



b.『조선명승지도감』1권 표지



c.『조선천연기념물』1권의 표지

그림 6.『조선의 자연유산: 명승지, 천연기념물』의 표지



그림 8. 식물 천연기념물 분포도(은행나무, 바늘잎나무)
출처 : 조선민족유산보존사, 『조선천연기념물』 1권, p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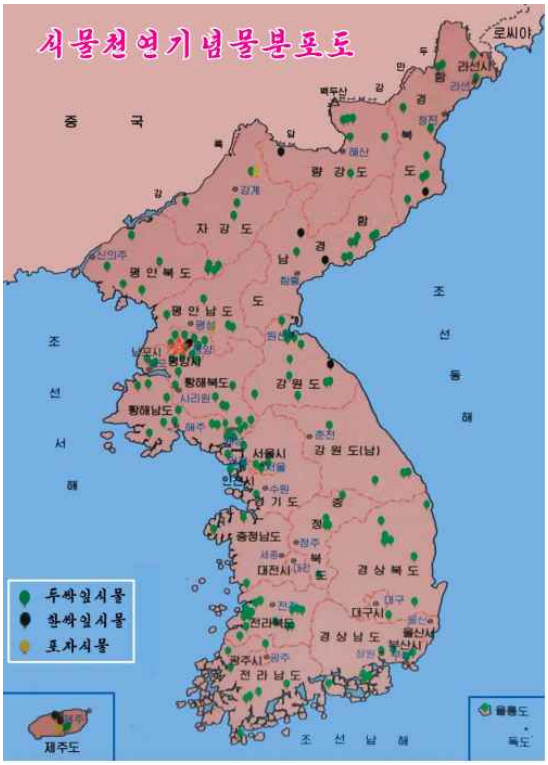


그림 9. 식물 천연기념물 분포도(두쌍잎식물, 한쌍잎식물, 포자식물)
출처 : 조선민족유산보존사, 『조선천연기념물』 2권, p191.



그림 10. 동물 천연기념물 분포도(포유류)
출처 : 조선민족유산보존사, 『조선천연기념물』 3권, p46'



그림 11. 지리 천연기념물 분포도
출처 : 조선민족유산보존사, 『조선천연기념물』 4권, p647.



그림 12. 지질 천연기념물 분포도
출처 : 조선민족유산보존사, 『조선천연기념물』 5권, p745.



그림 13. 조선명승지분포도
출처 : 조선민족유산보존사, 『조선의 명승지』 1권, p7.

표 13. 『조선명승지도감』(2017)으로 본 명승지 현황

구분	명산	바다가	섬	온천	폭포	지하	호수
평양시	봉화산, 룡악산, 모란봉, 대성산, 만경대	-	릉라도	-	-	-	-
개성시	-	-	-	-	박연폭포	-	-
남포시	우산장	서해갑문	와우도	-	-	-	태성호
라선시	-	-	비파도	-	-	-	
강원도	광명, 금강산	총석정, 명사십리, 송도원	-	-	울림폭포	-	동정호, 시중호, 삼일포
량강도	백두산, 백두산밀영	-	-	-	-	-	삼지연
자강도	장자산	-	-	-	-	-	-
평안남도	신양금강	-	-	-	-	송암동굴	연풍호, 석암
평안북도	의주통군정, 약산동대, 삭주거문산, 묘향산	철산장송	-	-	동림폭포	룡문대굴	수풍호
함경남도	옥련산, 삼부연, 백운산, 동흥산	기암, 학사대, 속후, 송단, 마전	-	-	-	-	부전호
함경북도	칠보산	집삼	-	김책세천, 경성하온포, 경성상온포	-	-	송흥, 장연호
황해남도	석담구곡, 장수산, 수양산, 구월산	장산곶, 룡수포, 몽금포	-	-	-	-	구암호
황해북도	경암산, 정방산, 신평금강	-	-	-	-	-	연탄호, 서흥호, 은파호

표 14. 『조선명승지도감』(2017)으로 본 천연기념물 현황

구분		식물	동물	지리	지질
북한	평양시	룡악산은행나무, 룡악산느티나무, 대성산두충나무, 룡악산회화나무, 청류벽회화나무, 룡악산참중나무, 덕동대추나무, 대성산향오동나무, 대성산미선나무, 대성산참등나무, 대성산뚝향나무, 룡산리소나무림	대동강자라, 대동강돌조개	-	《조선시조새》화석, 《시조개구리》화석, 대성산중생대화석, 모란봉규화목, 서평양습곡, 옥류약수
	개성시	성균관느티나무, 개풍은행나무, 개풍느티나무, 삼거리느티나무, 만월대느티나무, 개성회화나무, 판문탱자나무, 개성피나무, 성균관은행나무, 개성산당화, 개성금솔, 개성흰소나무, 관음사은행나무	판문흰두루미	박연룡바위	-
	남포시	우산장느티나무, 석천동느티나무, 수산리약밤나무	덕도저어새, 평안남도너화, 서해갑문겨울새살이터	-	평남온천, 강서약수, 신덕수
	라선시	우암산벚나무군락, 원정리해당화군락	우암물개	-	-
	강원도	창도늘어진소나무, 원산튤립나무, 광명느티나무, 원산느티나무, 안변느티나무, 김화당느릅나무, 원산홑방울나무, 원산칠엽나무, 원산감나무, 금강국수나무, 두류산고양나무군락, 삼방왕제비꽃, 금강초롱, 고성참대, 두문동은행나무, 이천영웅은행나무, 가재울은행나무, 원산가라목, 원산향나무, 원산금솔, 판교전나무, 내금강전나무림, 원산구상나무, 원산종비나무, 원산소나무, 금구리소나무, 광명소나무림, 창터소나무림	법동수달, 세포조선소, 룡흥리백로, 왜가리, 천내고니, 통천알섬바다새번식지, 금강모치, 외금강남생이	삼방협곡, 국도, 해금강솔도, 해금강문, 상팔담, 련주담, 삼선암, 귀면암, 금강산닭알바위, 천선대, 명경대, 구룡폭포, 금란굴	금강수정, 평강탄탈-니오비움광체로두, 금강산온천, 광명약수, 삼방약수, 마식령샘물
	량강도	갑산비슬나무, 백암좀골담초군락, 백두산만병초, 백두산들쭉나무, 북포태산왕대황, 남포태산왕대황, 후창조릿대군락, 연지봉소나무	백두산조선범, 삼지연사슴, 백암사슴, 삼지연누렁이, 백암검은돈, 백암쥐토끼, 풍산개, 삼지연메닭, 대홍단메닭, 신파닭, 천지산천어, 합수도롱룡	백두산장군봉, 백두산천지, 간장늪, 리명수폭포	대하리단층, 내곡온천
	자강도	룡대만지송, 양토비슬나무, 성하왕찔광나무, 오가산피나무, 전천돌부채군락, 오가산원시림, 오가산주목, 전천전나무, 시중긴방울	룡림큰곰, 흥주닭, 노랑모시범나비	성하감입사행	신적약수, 시중약수

	가문비나무림, 오가산잣나무, 가산령잣나무, 오수덕잣나무림			
평안남도	성천가지주먹풀군락, 북창느삼나무군락, 양덕노각나무, 숙천주염나무, 성천밤나무, 맹산검은소나무림, 룡포스트로브스소나무림, 자산은행나무, 안국사은행나무, 평원훈련정은행나무	청천강은어, 대흥고려산천어, 룡운리백로, 왜가리, 문덕흰두루미, 대흥수달, 대흥사향노루	밀전동굴	석탕온천, 성천온천, 양덕온천, 성천습곡
평안북도	하단리꼬리지달래, 묘향산두봉화군락, 묘향산들메나무, 학당옻나무군락, 신미도생강나무군락, 묘향산산뽕나무, 향산비슬나무, 삭주황목련군락, 묘향산소나무, 좌리전나무, 정주은행나무, 상원암은행나무	철산조개, 선천대장지, 의주재비둘기, 의주원앙새, 대감도저어새, 논골백로, 왜가리, 묵이도노랑부리백로, 랍도노랑부리백로, 운무도노랑부리백로, 묘향산날다라미	룡연폭포, 이선남폭포, 천주석, 막대바위, 거북바위, 비단섬코끼리바위	옥호동약수, 운산온천, 운산금광체로두, 삭주린회석광체로두, 백토동화석보호구
함경남도	부전산파군락, 죽도신의대군락, 곡구리백리향군락, 신흥엄나무, 북청산수유나무, 속후회화나무, 조상사과나무, 3.1밤나무, 리원팽나무, 단천만지송, 함흥반송, 중동리소나무, 가진소나무, 청백향나무, 동흥산은행나무, 금야은행나무	속사강명태, 장진정장어, 서목리왜가리, 정평백로, 금야흰두루미, 참매	청도해식굴, 부연리천주폭포, 백악폭포, 광포, 리원구석, 홍원솔도, 옥련산돌강	검덕습곡, 허천동광체로두, 백금산마그네사이트광체로두, 오색화강암, 포거옥돌
함경북도	운만대신의대군락, 관모봉왕대황, 근동오미자군락, 명천오동나무, 회령백살구나무, 덕인참나무, 회령밤나무, 개심사약밤나무, 경성백목련, 포중소나무, 함진소나무, 고진소나무, 명간전나무림, 명천단천향나무군락	마양사향노루, 연주노랑나비, 마양송어, 마양열묵어, 관모리산천어, 덕인왜가리, 마양흰족제비, 관모봉큰곰	금강봉과 금강굴, 로적봉, 온포선바위, 명간선바위, 해칠보무지개바위, 무계호, 해칠보달문, 해칠보솔도, 천상수아흔아홉굽이	세천온천, 온포온천, 경성모래온천, 무산철광체로두, 부윤니켈광체로두, 함진동식물화석층, 향교골규화목, 길주조개화석층, 명간제3기조개화석층, 삼봉리고동물화석, 온성물고기화석층
황해남도	강호능소화, 장수만리화, 옹진이팝나무, 은천씨감나무, 강호좀구슬피나무, 해주모과나무, 신원쌍둥이느티나무, 석담느티나무, 홍골(은률)황목련, 옹진왕삼나무, 해주락우송, 연안은행나무, 배천은행나무, 신원은행나무, 과일군은행나무	구월산애기개구리, 연안고니, 홍현백로, 옹진재두루미, 룡연재두루미, 배천재두루미, 장연조선소, 구월산복작노루	오차바위, 몽금포코끼리바위, 룡정원소	태탄샘물, 초정약수, 삼천온천, 배천온천, 옹진온천, 종달온천, 장수산습곡, 강령륜조화석, 강령골뱅이화석
황해북	만달산죽대둥글레, 황주련꽃, 답	구락리자라, 구락	달해산성절	홀동석로두, 금

	도	동산가침박달군락, 평산엄나무 평산대추나무, 상원떡갈나무, 신계황목련군락, 정방산목란, 입문소나무, 신계은행나무	리어름치, 쒜리, 린산클락새	벽, 고령산평탄면	천식물화석, 은파해조류화석, 룡산리해조류화석, 룡궁리공룡발자국화석
남한	서울시	삼청동등덩굴, 창덕궁다래나무, 재동흰소나무, 원효로흰소나무, 서울신림동굴참나무, 삼청동측백나무, 창덕궁향나무, 문묘은행나무	-	-	-
	부산시	부산수영동곰솔, 범어사등덩굴군락, 부산진배롱나무	-	-	-
	대구시	달성측백나무림	-	-	-
	울산시	두서면은행나무	-	-	-
	인천시	인천신현동회화나무, 대청도동백나무자생지, 강화갑곶리탱자나무	신도노랑부리백로, 갈매기번식지	백령도 남포리콩돌해안, 백령도 사곶모래터	-
	강원도(남)	양구개느삼자생지, 삼척근덕면엄나무, 삼척소달면긴잎느티나무, 반계리은행나무, 녕월은행나무	횡성압곡리백로, 왜가리번식지, 철원천통리철새살이터, 양양포매리백로, 왜가리번식지, 정암사열묵어살이터, 울산쇠고래회유해면	삼척 대이리동굴지대	-
	경기도	백사도립리반룡송, 파주적성면물푸레나무, 룡주사회양나무, 송포흰소나무, 양주양지리향나무, 룡문사은행나무	한강하류재두루미살이터 려주 신접리백로, 왜가리번식지, 광릉클락새살이터	-	-
	경상남도	욕지면모밀잣밤나무군락, 추도후박나무, 합천묘산면소나무, 김해신천리이팝나무, 신방리엄나무군락, 통영비진도팔손이나무자생지, 남해산닥나무자생지, 사천곤양면비자나무	거제도학동팔색조번식지, 통영도선리백로, 왜가리번식지, 거제도연안다마지살이터, 락동강하류철새살이터	밀양남명리얼음골	함안층새발자리화석
	경상북도	선산독동리반송, 상주화서면반송, 청도각북면털왕버들, 영풍단산면갈참나무, 안동림동면굴참나무, 안동록전면느티나무, 청도매전면늘어진소나무, 청송부곡동왕버들, 운문사늘어진소나무, 송사동소태나무, 오류리등덩굴 라리동울릉국화, 섬백리향군락, 울진굴참나무, 금릉대덕면은행나무, 안동와룡면뚝향나무, 청송안덕면향나무, 울진화성리향나무,	독도바다새번식지, 울릉도 사동검은비둘기살이터, 봉화석포면열묵어살이터	울진성류굴	의성제오리공룡발자리화석, 운평리구상화강암

		울진죽변리향나무, 통구미향나무, 청도이서면은행나무, 룡계은행나무			
	전라남도	완도례송리감탕나무, 고흥금탑사비자나무림, 백양사비자나무림, 강진병영면은행나무, 진안은수사청실배나무, 장흥관산읍곰솔, 장흥용산면푸조나무, 담양대전면느티나무, 백련사동백나무림, 령광불갑면식나무자생지, 함평북가시나무자생지, 대구면푸조나무, 쌍암면이팝나무, 송광사곱향나무, 진도림회면비자나무	령광칠산도 갈매기, 노랑부리백로, 저어새번식지, 구굴도바다새번식지, 칠발도바다새번식지, 무안룡월리백로, 왜가리번식지, 진도고니살이터, 진도개	-	-
	전라북도	임실관촌면산개나리꽃나무군락, 임실관촌면가침박달군락, 마이산줄사철나무군락, 부안미선나무군락, 고창삼인리만지송, 고창삼인리송악, 전주삼천동곰솔, 무주설천면반송, 김제봉남면왕버들, 김제봉남면느티나무, 진안평지리이팝나무, 익산신작리곰솔, 고창삼인리동백나무림, 부안중계리꽝꽝나무군락, 부안도청리호랑가시나무군락, 내장산굴거리나무군락, 부안격포리후박나무군락	-	-	무주구상화강편마암
	충청남도	안면도모감주나무군락, 부여내산면은행나무, 당진송산면회화나무, 마량리동백나무림, 연기봉산동향나무, 금산행정은행나무, 금산보석사은행나무	-	-	-
	충청북도	괴산사담리망개나무자생지, 제원송계리망개나무, 연풍립석소나무, 영동매천리미선나무자생지, 괴산률지리미선나무자생지, 보은흰소나무, 속리소나무, 괴산미서난무자생지, 령천측백나무림, 소백산주목군락, 읍내리은행나무	금강어름치, 진천왜가리번식지	-	-
	제주도	제주도삼도파초일엽자생지, 제주도한란, 제주시곰솔, 도순리녹나무자생지, 서귀포담팔수나무, 제주도구좌읍문주란자생지	제주말, 사수도바다새번식지, 제주도무태장어살이터	제주도 만장굴과 금녕굴	-

2) 『민족유산』을 통해 본 자연유산 지정 현황

『조선의 자연유산』이 발간된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자연유산 현황에 대해 파악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북한의 민족유산 관련 연속간행물인 『민족문화유산』을 분석하였다. 이 잡지는 2018년까지는 『민족문화유산』이었다가 2019년에는 『민족유산』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1년에 4회 발간되는데 구성은 매년 조금씩 바뀌지만 2019년을 기준으로 보면, '사설', '절세위인과 민족문화유산', '인물소개', '민족고전소개', '유적유물소개', '사진소개', '우리민족의 미풍량속을 지켜나가자', '세계민속 및 유산소개', '일제는 조선 인민의 철전지원쑤', '상식' 등으로 구성된다. 목차에는 없지만, '새로 지정된 천연기념물들'과 같이 작은 코너가 있어 해당 연도에 새로 지정한 문화재 현황에 대해 엿볼 수 있다.

또한 2019년 1호부터 '명승지 소개', '천연기념물 소개'가 추가되어, 각 2~3곳의 명승지나 천연기념물을 소개하고 있다. 2019년 1호부터 최근 입수된 2022년 4호까지 발간된 『민족유산』에서 소개하는 명승지와 천연기념물은 아래와 같다. 『조선의 자연유산』과 비교해보면, 명산에 속하는 봉우리를 명승지 한 개소로서 소개하고 있다는 점이 다르다. 『민족유산』에서는 북한에 위치한 천연기념물만을 소개하고 있다는 점이 다르다. 또한 천연기념물 소개 시 국가 지정 번호를 명시하고 있지만, 명승지는 지정 번호를 명시하지 않고 있다는 점은 『조선의 자연유산』과 같다.

정일봉은 2019년 1호와 더불어 2022년 1호에도 소개됐는데 전문의 내용이 똑같다. 정일봉은 『민족유산』의 명승지 소개란에 처음으로 소개되었으며, 두 번이나 반복 소개될 정도로 북한에서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확인할 수 있다.

표 15. 『민족유산(2019~2022)』에 소개된 자연유산

출처	명승지	천연기념물
『민족유산(2019)』 1호	정일봉 백두산	광명느티나무 금야은행나무 삼지연누렁이
『민족유산(2019)』 2호	만경대 송도원	조선소 이선남폭포 옥류약수
『민족유산(2019)』 3호	신평금강 룡수포	백두산조선범 대동강자라와 구락리자라 해칠보솔도
『민족유산(2019)』 4호	박연폭포 의주통군정	백토동화석보호구 고성참대 의주원앙새
『민족유산(2020)』 1호	삼지연	천지산천어 삼선암

『민족유산(2020)』 2호	총석정	상팔담 청도해식굴
『민족유산(2020)』 3호	동림폭포	몽금포코끼리바위 금강초롱
『민족유산(2020)』 4호	신양금강	묘향산산뽕나무 거북바위
『민족유산(2021)』 1호	동정호	부전산파군락
『민족유산(2021)』 2호	삼부연	금강국수나무 연주노랑나비
『민족유산(2021)』 3호	경암산	오색화강암 마양흰족제비
『민족유산(2021)』 4호	수풍호	원산종비나무 법동수달과 대흥수달
『민족유산(2022)』 1호	정일봉	백두산만병초 삼지연사슴
『민족유산(2022)』 2호	만경봉	룡악산느티나무 대동강돌조개
『민족유산(2022)』 3호	몽금포	룡연폭포 린산클락새
『민족유산(2022)』 4호	장자산	밀전동굴 삼지연메닭과 대홍단메닭

3. 김정은 시기 자연유산 정책의 주요 특성

1) 자연유산의 확대 지정

김정은 시기의 민족유산 보호사업과 관련된 업적을 소개한 신문기사를 통해 2014년 담화문 이후 2019년까지 5년간 새로 등록된 민족유산의 개수를 가늠해볼 수 있다. 아래 사설에서는 새로 등록한 물질유산, 비물질유산, 자연유산의 수가 250여 개라고 소개한다. <표 16>은 김정은 시기에 새로 등록되었다고 소개된 자연유산을 정리한 것이다.

> 지난 5년간 국보유적과 유물, 명승지와 천연기념물, 국가 및 지방비물질유산을 비롯하여 국가적으로 새로 등록된 물질유산, 비물질유산, 자연유산의 수는 250여건에 달한다.[35]

표 16. 김정은 시기 새로 지정된 자연유산

지정 년도	내용	비고
2015	광포종오리	천연기념물
	동중리금강벼랑, 연안온천	천연기념물
	마식령샘물, 대화봉샘물	천연기념물
2017	선군룡림호	명승지
2018	안학동반재배콩	천연기념물
2020	평양 보통강약수	천연기념물
	금강산 빙하흔적, 송흥온천	천연기념물
2021	오가산 자연보호구	천연기념물
	비파물범	천연기념물
	'백토새' 화석	천연기념물

*출처 : 『민족문화유산』, 『민족유산』, 『로동신문』, 『민주조선』을 참고하여 연구자 작성

(1) 정권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자연유산

김정은 시기에는 고조선-고구려-고려에서 북한으로 이어지는 한반도 이북지역의 역사적 정당성을 강조하기 위해 이 시기 유산이 다수 발굴되었다. 뿐만 아니라 이북지역과 평양에서 오래전부터 문명이 발생되었다는 설을 입증하기 위한 화석이 발굴되어 자연유산으로 지정되었다.

35) 저자 미상,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민족유산 보호사업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을 길이 빛내여 나가자," 『민족문화유산』, 제4호(2019), pp. 3~4.

2014년 9월 12일에는 ‘조선시조새’ 화석이 발굴된 신의주의 백토동화석보호구에 대한 보존대책을 지시하였고, 김일성종합대학과 연계하여 평안북도 신의주시 백토동에 있는 천연기념물 백토동화석보호구에 대해 현장 시찰 후 설명문판과 표식주, 주의사항판을 제작설치하고, 고생물학연구에 필요한 지층을 보존하기 위한 보호구역을 새로 설정하였다.

2018년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안학동반재배콩’도 특기할만한하다. 반재배콩은 야생식물재배에 의한 농업활동의 시초를 보여주는 증거로 러시아와 중국 등은 자국의 영토 내에 문명발상지로서 입지를 다지기 위해 국가적인 노력을 투입하여 조사를 수행해왔다. 2018년에 북한에서 천연기념물로 지정한 안학동 반재배콩은 고대문명의 발상지라고 주장하는 대동강 일대의 대동강문화의 서사를 덧붙여주는 자연유산으로 자리하고 있다.

> 주체107(2018)년에 대성산 안학궁터주변에서 발견된 반재배콩군락의 <안학동반재배콩>이 국가천연기념물 제194호로 등록되여 우리 민족의 귀중한 자연유산으로 후손만대에 길이 전해갈 수 있게 되었다. 반재배콩은 인간의 재배과정을 통하여 자연계에 생긴 식물학적종이라는 측면에서는 인간이 창조한 첫 재배콩이라고 볼수있지만 그거싱 아직 야생적인 생태적진화형질을 벗지 못한 재배콩이라는 의미에서는 재배종콩과 엄밀히 구별하여 반재배콩(또는 반야생콩)으로 부른다. 평양을 중심으로 하는 대동강일대의 반재배콩군락은 우리 나라 그 어느지역의 군락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크기와 밀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확증되였을뿐 아니라 포기모양, 종자의 크기와 색깔, 종자껍질의 두께와 물침투성, 단백 및 기름함량 등 개별적 형질들에서 다양성이 확증됨으로써 이 지역이 반재배콩의 1차 기원지이고 분포의 중심이라는 것이 밝혀졌다.
>
> ...중략... 반재배콩의 문화사적의의는 다음으로 대동강문화발상에 또 하나의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다는데 있다. 대동강류역은 고대문명의 발상지인 동시에 고대문화의 중심지이다. 우리 민족의 원시조인 단군이 B.C.3000년기초에 평양을 중심으로 하여 동방에서 처음으로 첫 고대국가 고조선을 건립함으로써 이 강류역에서는 드디여 새로운 문명시대가 펼쳐지게 되었다. 이때로부터 대동강류역은 고대문화의 중심지, 조선민족의 성지로 눈부신 빛을 뿌리였다.
>
> 인류의 문명이 해당 지역에서의 고유한 첫 야생식물재배에 의한 농업활동의 시작에 시초를 두고 있다는 것은 공인된 견해이다.

(2) 근현대 시기 혁명유산의 자연유산화

김정은 시기 지정된 자연유산은 이전 시기 최고지도자와 관련된 근현대 유산이

다수이다. 예컨대 광포종오리는 1963년 광포오리목장 건설을 지시한 김일성이 오리 이름도 '광포종오리'로 지어준 것이다. 마식령샘물은 마식령 스키장 공사에서 발견된 샘터이다. 근대 시기 김일성, 김정일의 역사적 산물이나, 천연기념물로 등재하며 혁명역사의 역사적 가치를 부각하고 있다.

신규 지정된 천연기념물 사례는 신문과 앞서 분석했던 연속간행물 『민족유산』을 통해 다수 찾아볼 수 있다. 2017년에는 동중리금강벼랑, 연안온천이 새로 지정되었다.[36] 동중리금강벼랑은 함경남도 덕성군 동중리에 위치하며, 김정일이 1967년 7월 방문하여 "경치가 아주 좋다고, 마치 금강산의 경치처럼 아름답다고 하시면서 농장원들이 일하다가 쉴참에 이런 경치좋은 곳에서 휴식하면 피로가 인차 풀릴 것이라고 교시"한 곳이다. 높이 20m, 너비 15m의 기묘한 풍치를 이루는 벼랑이다. 연안온천은 황해남도 배천군 금성리에 우치하며 조선시대 말부터 이용된 온천이다.

『민족유산』 2017년 2호에서는 새로 등록된 천연기념물로 마식령샘물과 대화봉샘물을 소개하고 있다.[37] 마식령샘물은 마식령산줄기의 스키주로 맞은 편 산기슭에서 용출되는 샘물로, 마식령스키장건설에 동원된 군인 건설자들에 의해 발견된 샘물이다. 김정은은 이에 대해 마식령호텔이 자리잡은 골짜기에서 나오는 샘물을 가지고 마식령상표를 붙인 샘물을 생산하게끔 교시하였다. 대화봉샘물은 강원도 원산시 탑동에 위치하며, 1974년 발견되었다.

한편, 광포종오리와 같은 동물 천연기념물을 새로 등록하기도 하였다. 광포종오리는 김일성이 1963년 6월 24일 광포오리목장 건설을 발기하고, 오리 이름을 '광포종오리'로 지어주었다고 한다. 김정일도 1960년 8월 광포오리목장을 현지지도 했는데, 이렇듯 김일성과 김정일의 업적이 깃든 광포종오리의 원 종을 잘 보호하면서 육성할 것을 교시하였다.

김정은 시기 새로 등록된 명승지로 소개된 사례는 선군룡림호가 대표적이다. 자강도의 '선군룡림호'를 새로운 국가지정 명승지로 등록했다는 점을 들 수 있으나 이름에서 알 수 있듯 '선군시대'인 김정일 시기의 혁명유산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나 명승지의 신규 지정을 소개하는 신문기사를 제외하고는 다른 정보를 찾기 어렵다.[38]

(3) 여러 보호 대상으로 중첩된 자연유산

---

36) 저자 미상, "새로지정된 천연기념물들," 『민족문화유산』, 제1호(2017), p.16.
37) 저자 미상, "[아름다운 조국강산] 최근에 새로 지정등록된 천연기념물들," 『민족문화유산』, 제2호(2017), p. 23.
38) "민족문화유산의 보물고를 풍부히 한 3년," 『조선중앙통신』, 2017.10.24.

김정은 시기 새로 지정된 자연유산은 주로 기존의 면(面)적 보호지역으로 지정된 유산의 자연 및 역사 자원을 자연유산으로 지정한 사례가 발견된다.

예컨대 백두산은 명승지이면서도, 조선범, 메닭, 쥐토끼, 누렁이, 사슴, 천지산천어, 검은돈 등의 천연기념물의 서식지이기도 하다. 또한 국외 보호지역으로는 최초로 1989년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등재되기도 하였으며 현재는 지질공원 등록을 위해 다양한 학술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오가산은 이미 오가산피나무, 오가산주목, 오가산잣나무 등이 천연기념물(식물)로 지정되어있었으며, 오가산원시림은 단일 수종이 아니라 원시림 전체를 천연기념물(식물)로 지정하였지만, 2021년에는 '오가산 자연보호구'를 국가지정 천연기념물로 새로 지정하여 오가산 관련 천연기념물은 5개에 이른다. 이렇듯 주요한 자연유산은 자원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등록하여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현상을 볼 수 있다.



그림 14. 백두산지구 동물천연기념물들
(출처: 『조선의 자연유산』, 642p)

2) 최신 과학기술 도입을 통한 자연유산의 기록화 및 보존관리

『민족유산(2019)』 사설에 따르면, 과학성의 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방법은 크게 과학연구기관과의 연계, 역사유물의 보존처리 시 최신시료 사용 및 국내 생산, 민족유산의 '자료기지화', 조선민족유산보존사의 역할 증진이라는 4가지 방법으로 요약된다.[39]

39) 최명철, "민족유산보호사업을 과학화하는데서 나서는 과업," pp. 19~20.

민족유산보호사업을 지식경제 시대의 요구에 맞게 과학적으로 진행할 수 잇는 방법으로 먼저, 과학연구기관들과 연계밑에 역사유적과 유물보존관리에 새로운 과학기술성과를 적극 받아들이는 것으로, 자연적 인위적인 영향으로부터 피해를 막고 역사유적과 유물을 잘 보존관리하기 위해 민족유산보호부문 일군들과 과학자들의 노력, 전문과학연구기관들과 긴밀한 연계 속에 과학기술성과들을 역사유적유물 보존관리에 도입해야 한다. 둘째로, 단청색감과 보존처리용시약 같은 필요 자재를 국내에서 생산 보장하도록 하는 것이다. 조선식 단청의 우아한 단청색감 개발을 추진하고, 국내에서 자체 생산보장하도록 해야 한다. 셋째, 역사유적과 유물, 명승지와 천연기념물들, 그리고 비물질문화유산을 자료기지화 하고 그에 대한 정보교류를 활발히 하는 것이다. 오늘에 이르기까지 역사유적과 유물들, 명승지와 천연기념물들이 수천여건이나 조사등록되었고, 비물유산들이 세계 및 국가비물질문화유산으로 등록되었다. 인민들의 향유물로 되기 위해 참관과 출판보도물을 통하 소개 선전을 강화하고, 정보산업시대의 요구에 맞게 정보교류사업을 활발히 해야한다. 정보교류사업을 활발히 벌리기 위해서 우선 지금까지 서지형태로 보관되여오던 등록대장들을 수자화하고 그것들을 메타자료기지화하기 위한 사업을 시급히 끝내야 하며 민족유산지리정보체계와 같은 현대적인 정보체계들도 적극 개발하여야 한다. 정보교류사업을 활발히 벌리기 위하여서는 또한 민족유산보호부문의 홈페지를 개설하고 그 기능을 높여 정보열람이 활발히 진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넷째로는 조선민족유산보존사를 전문분야의 실력있는 일군들로 꾸리고 그들의 역할을 높여 민족유산보호사업에서 과학연구중심, 자문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조선민족유산보존사는 전국의 역사유적과 명승지, 천연기념물, 비물질문화유산들을 조사등록하고 그 보존을 위한 연구사업을 진행하는 민족유산 보호부문의 종합적인 과학연구기지이며 이와 함께 과학연구사업에서 이룩한 성과를대내외에 널리 소개하는 출판선전기지이다. 조선민족유산보존사를 전문분야의 실력있는 일군들 다시 말하여 역사, 동식물, 지질, 지리, 건축, 미술,화학,정보 등 여러 분야의 실력있는 일군들로 꾸리고 그들의 역할을 높여야 한다. 조선민족유산보존사는 민족유산보호사업에서 과학연구중심으로서의 기능뿐만 아니라 자문기관으로서의 기능도 함께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조선민족유산보존사는 민족유산보호사업과 관련하여 국가기관이나 조직들로부터 문의가 제기되면 어느때든지 원만히 대답을 줄수있도록 준비되어야 한다. 각도의 민족유산보존사들도 해당 지역의 민족유산보호사업에서 과학연구중심, 자문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준비되여야 한다.

김정은 시기에 자연유산 분야에서 과학성의 원칙이 적용된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과학연구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자료기지화'

최신 과학기술을 이용하여 명승지를 조사, 기록하려는 행태가 나타난다. 2017년의 환경과학통보 기사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전국적으로 80여 개의 명승지들을 새로운 보호구형태인 자연공원으로 설정"하였으며, 이들 자연공원을 보호관리하는데서 나서는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자연공원관리프로그램인 '제일강산'을 개발하였다(김광철·홍명학, 2017: 14-15). '제일강산'의 주요 기능은 먼저, GIS기능이 탑재된 응용프로그램인 Mapoject 2.0을 이용하여 자연공원의 위치와 영역, 자연공원 영역안의 혁명사적지와 역사유적, 온천과 약수 등의 요소들을 지도상에서 직접 볼 수 있다. 두 번째로 자연공원자료를 열람할 수 있으며, 세 번째로, 편집할 수 있다. 네 번째로는 층차 분석법에 의해 산림생태계를 위주로 하여 생태환경분석기능을 갖추었다. '제일강산' 프로그램을 통해 해당 자료를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등급을 선정평가할 수 있으며, 국가적인 자연보호구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관련 기관과 관계자 및 연구사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아래 표는 '제일강산' 프로그램 분석에 이용되는 지표의 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이다.

표 17. 자연공원정보관리프로그램 '제일강산' 분석에 이용되는 표와 지표

No.	표명	지표명
1	기호자료	보호구이름, 도(시), 군(구열), 리(동), 면적(정보), 설정근거, 주요보호대상, 생태계류형
2	기상기후	보호구이름, 특징, 년강수량, 하루최대비내림량, 최대강우날자, 최대강우지속일수(일), 년평균기온(℃), 최저기온(℃), 최고기온(℃), 10℃이상적산온도, 5℃이상적산온도, 년평균바람속도(m/s), 해비침률(%), 땅어는깊이(cm), 첫서리날자(월/일), 마감서리날자(월/일)
3	지리지형	보호구이름, 림반, 소반, 방위, 경사도(도), 경사길이(m), 평균해발높이(m)
4	토양 및 암석	보호구이름, 기반암종류, 토양류형, 유효토심(m), 부석층두께(cm)
5	식물상	보호구이름, 군락계층수, 주수종이름, 동반수종이름, 키나무밀도(본/정보), 평균높이(m), 식물피복률(%), 숲갓층피복률(%), 년평균축적량(㎥), 위기희귀특산종이름, 위치(림/소반)
6	동물상	보호구이름, 동물수종(종), 짐승류목록, 량서류목록, 파충류목록, 새류목록, 어개류목록, 위기회귀특산종목록
7	혁명사적	보호구이름, 사적날자(년/월/일), 사적이름, 사적구분, 사적형태, 사적내용
8	력사유적, 고적, 천연기념물	보호구이름, 유적이름, 유적구분, 국가지정번호, 유적내용
9	명소	보호구이름, 명소이름, 경관류형, 특징
10	봉사조건	보호구이름, 봉사시설이름, 봉사시설형태, 봉사내용
11	식물종다양성	보호구이름, 표준지총면적(㎡), 키나무종이름, 수량(본), 관목이름, 풀이름
12	관리실태	보호구이름, 개발건설대상명, 개발건설종류, 보호구로부터의 거리(m), 농경지면적(정보), 산불피해면적(정보), 해충피해면적(정보), 도벌면적(정보)

*출처: 김광철, 홍명학(2017: 15)

(2) 조선민족유산보존사의 역할 증진

2014년 담화문 이후로 조선민족유산보존사는 물질유산, 비물질유산, 자연유산에 대한 '민족유산보호사업의 과학연구중심, 자문기관'의 역할이 강조되었다. 문화재 국제교류 사업으로 분야를 넓혀 '조선중앙력사박물관' 발굴대와 함께 조사단을 구성하여 제8차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 발굴조사에도 참여하였다. 이때 문화재 3D 스캔 기술을 익히고 이후 발굴현장에서 적용하고 있는 것을 2020년 '남포시 룡강군' 고구려 벽화무덤에서 포토스캔 기술을 활용한 3D발굴현장 모습을 통해 파악할 수 있었다. 현재는 코로나19 때문에 교류사업이 미진하지만, 이러한 사례를 통해 조선민족유산보존사는 민족유산보호사업에 있어 과학화뿐 아니라 국제기구와 다른 나라들과의 교류사업에 있어서도 주도적은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민족유산보호국은 국제교류를 총괄하고, 조선민족유산보존사는 조사·연구를 수행하며, 조선민족유산보호기금은 재정운영을 담당하여 진행될 것이다.[40]

자연유산 분야에서 조선민족유산보존사의 역할은 『조선명승지도감』과 『조선천연기념물도감』을 집대성하여 『조선의 자연유산』을 출판했다는 것이다.

3) 국제적 기준에 따른 민족유산보호체계 정립

(1) 세계유산 체제에 따른 민족유산 분류 체계 확립

2012년 채택된 『문화유산보호법』에서는 '물질문화유산'과 '비물질문화유산'으로 구분했다면, 『민족유산보호법』의 제2조 (민족유산의 정의)에서는 '문화'를 삭제하여 '물질유산'과 '비물질유산'으로 변경하였으며, '자연유산'을 추가하고, 자연유산에는 명승지와 천연기념물이 속한다고 정의한다.

이러한 분류 체계는 유네스코 세계유산 제도에서 분류하는 '문화유산', '자연유산', '복합유산', 그리고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제도의 '인류무형문화유산'이 혼용된다. '세계문화유산'은 북한의 '물질유산'에, '세계자연유산'은 '자연유산', '인류무형문화유산'은 '비물질유산'에 대응된다.[41] 이는 국내 유산관련 체계를 국제 기준과 맞춰 국제 보호체계

40) 남보라, "북한의 문화재 보호관리기관 연구-'민족유산보호국'의 변천과 최근변화를 중심으로-," 『민족문화연구』 제94호(2022), pp. 663~664.

41) 남한은 2023년 5월 『국가유산기본법』을 제정하여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이 국가유산에 속하는 국가유산체제로 개편하여 2024년 5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국가유산기본법」(시행 2024. 5. 17. 법률 제19409호, 2023. 5. 16., 제정)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50955&efYd=20240517#0000〉(검색일: 2023.11.22.)

(2) 국제적 기준에 부합한 자연유산의 보존관리 도모

최근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정책을 살펴보면, 신규 유산의 '등재'를 통해 해당 유산의 가치를 발굴하고,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등재한 유산이 훼손되지 않도록 '보존'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예컨대, 2015년 세계유산 위원회에서 각 국에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권고하였으며, 각국에서는 관광 및 도시개발 압력에 의한 유산의 부정적 영향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고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

북한에서도 국제보호지역 등재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시도하는 한편, 민족유산체계를 개편하며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도록 유산과 그 주변환경의 보호를 고려하고 있다. 먼저 국제보호지역 등재와 관련된 조문을 살펴보면, 『민족유산보호법』 제9조 (민족유산보호사업에서의 교류와 협조)에서 "국가는 민족유산보호사업에서 다른 나라,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진시킨다."라고 언급하는데, 이는 국제기구나 3국과의 협력을 통해 국제보호지역을 등재하려는 북한의 실천으로 이어졌다.

김정일 시기부터 등재를 시도했던 개성역사유적지구는 몇 차례 시도 끝에 2013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고,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의 경우 김정은 시기 이전에는 1989년 백두산을 시작으로, 2004년에는 구월산[42], 2009년에는 묘향산이 등재되었으며, 김정은 집권 이후인 2014년에는 칠보산[43]을, 2018년에는 금강산[44]이 명단에 올랐다.

국제보호지역은 유네스코에서 관할하는 세계유산, 지질공원, 생물권보전지역과 람사르 협회에서 담당하는 람사르 습지가 포함된다. 북한은 2023년 기준 유네스코 세계유산 2건,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5건, 람사르 습지 2건을 등재하였다. 국제보호지역은 중요한 역사문화·자연자원이 각 복합적으로 얽혀있어 중복 지정되는 경우가 있다. 예컨대, 제주도의 경우에는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람사르습지를 모두 보유한 4관왕이다. 북한도 중요한 역사유적과 자연유산이 분포해있는 명산을 중심으로 국제보호지역의 등재를 추진하며, 비교적 등재가 수월한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을 등재하고, 타 국제보호지역 등재를 준비하고 있다.

국제보호지역을 등재할 때에는 해당 보호지역에 대한 자국의 국내 보호관리 체계가 갖춰져야 하며, 보호지역으로서의 가치를 논리 정연하게 정리한 신청서를 제출

42) "우리 나라의 구월산자연보호구를 유네스코에서 국제생물권보호구로 등록,"『민주조선』, 2004.11.5.
43) "칠보산지구를 세계생물권보호구로 등록,"『민주조선』, 2014.7.4.
44) "금강산지구 세계생물권보호구로 새로 등록,"『로동신문』, 2018.8.4.

해야 한다. 북한에서는 국내법에 근거하여 '자연보호구'로 지정하거나, 명승지와 천연기념물로 등록하여 보존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국제보호지역으로 등재하고 있다. <표 18>은 북한의 국제보호지역과 국내 자연유산(명승지, 천연기념물) 현황을 정리한 표이다.

표 18. 북한의 국제보호지역 지정 현황

구분		국제보호지역 명(지정/신청년도)	국내 자연유산 명	비고
유네스코 세계유산 (2건)	문화유산	고구려 고분군(2004)	-	-
		개성역사유적지구(2013)	-	-
		(잠정)평양역사유적지구(2000)	(명승지) 대성산	-
			(천연기념물) 대성산두충나무, 대성산향오동나무, 대성산미선나무, 대성산참등나무, 대성산뚝향나무, 대동강자라, 대동강돌조개, 대성산중생대화석,	
	자연유산	(잠정)칠보산(2000)	(명승지) 칠보산	-
			(천연기념물) 금강봉과 금강굴, 로적봉, 온포선바위, 명간선바위, 해칠보무지개바위, 무계호, 해칠보달문, 해칠보솔도, 개심사약밤나무, 명천오동나무, 운만대 신의대군락, 포중소나무, 명천오동나무	-
		(잠정)구장지역 동굴(2000)	(명승지) 룡문대굴	-
	복합유산	(잠정)묘향산역사유적지구(2000)	(명승지) 묘향산	-
			(천연기념물) 묘향산두봉화군락, 묘향산들메나무, 묘향산산뽕나무, 향산비슬나무, 묘향산소나무, 상원암은행나무, 이선남폭포, 천주석,	
		(잠정)금강산역사유적지구(2000)	(명승지) 금강산	-
			(천연기념물) 금강수정, 금강산온천, 국도, 해금강솔도, 해금강문, 상팔담, 련주담, 삼선암, 귀면암, 금강산닭알바위, 천선대, 명경대, 구룡폭포, 금란굴, 금강모치, 외금강남생이, 금강국수나무, 금강초롱, 내금강전나무림	
유네스코 지질공원(0건)		(신청)백두산(2020)	-	-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5건)		백두산(1989)	(명승지) 백두산, 백두산밀영, 삼지연	-
			(천연기념물) 백두산장군봉, 백두산천지, 리명수폭포, 백두산조선범, 삼지연사	

		슴, 삼지연누렁이, 삼지연메닭, 천지산천어, 갑산비슬나무, 백두산만병초, 백두산들쭉나무, 북포태산왕대황, 남포태산왕대황, 연지봉소나무	
	구월산(2004)	(명승지) 구월산	-
		(천연기념물) 구월산애기개구리, 구월산복작노루	
	묘향산(2009)	-	중복
	칠보산(2014)	-	중복
	금강산(2018)	-	중복
람사르 습지(2건)	문덕철새보호구(2018)	(천연기념물) 문덕흰두루미	-
	라선철새보호구(2018)	(명승지) 비파도	-
		(천연기념물) 우암산벗나무군락, 원정리해당화군락, 우암물개	
	(잠재)옹진철새(습지)보호구[45]	(천연기념물) 옹진재두루미	잠재자원

*출처 : 유네스코 홈페이지 참고하여 연구자 작성.

4) 자연유산을 통한 조선민족제일주의, 우리 국가제일주의 교양

김정은은 김정일애국주의를 주창하면서, 김정일의 조선민족제일주의를 흡수 발전시켰다. '사회주의적 애국주의'의 최고 정화인 '김정일 애국주의'는 2015년부터 북한의 정치사상 교육 체계에 포함되었는데, 이때 당국이 수립한 5대 교양체계는 기존 북한의 정치사상 교육의 틀에서 '사회주의적 애국주의'를 '김정일애국주의'로 바꾼 형태로 나타난다.[46] 아래 사설은 애국주의 교양에 있어 자연유산에 대한 해설사들의 역할의 중요성을 언급한 내용이다.[47] 애국주의 교양에 있어 자연유산에 대한 직접적인 경관 체험은 중요한 수단이며, 이때 자연유산에 얽힌 지식과 상식 및 역사를 전달하는 매개자로서 강사들의 역할은 중요하게 여겨진다.

> 특히 력사유적유물과 우리 인민의 우수한 민속전통, 명승지와 천연기념물들을 직접 맡아 해설 선전하는 강사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이는 문제가 매우 중요하다.
> 민족유산부문의 해설강사들은 참관자들에게 반만년의 유구한 력사와 찬란한 문화를 알려주는 선전자인 동시에 그들을 슬기롭고 재능있는 조선민족에 대한 열렬한 사랑과 긍지를 간직하도록 교양하는 교양자이다.
> 그러므로 민족유산부문 해설강사들은 우리 민족의 귀중한 재보인 가치있는 력사유적

45) https://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3235
46) 차승주, "김정은 시대 북한의 정치사상교육: 5대 교양을 중심으로,"『도덕윤리과교육』, 제64호(2019), p.288; 김보민, "북한 민족제일주의 담론의 변화: 조선민족제일주의에서 우리 국가제일주의로," 『현대북한연구』, 제24권 1호(2021), p.160.
47) 김순녀, "민족유산보호사업에서 해설강사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이기 위한 몇가지 문제," 『민족유산』, 제1호(2019), pp. 17~18.

유물과 우리 민족의 전통, 명승지와 천연기념물들을 잘 알려주며 그를 통하여 우리 근로자들과 청소년들에게 조선민족이 제일이라는 정신을 깊이 심어주어야 한다.
력사유적과 유물, 민족적 전통과 풍습, 명승지와 천연기념물 등에 대한 해설은 순수 실무적인 강의가 아니라 자연과 사회에 대한 다방면적인 과학지식과 생활상식을 보급하는 사업이다.
또한 이름난 명승지들과 천연기념물들의 형성과 그로부터 생겨난 전설과 유래, 유모아 등에도 정통해야 한다.
우리 인민들에게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 해학적 웃음을 안겨주는 아름답고 이름난 명산들과 지하궁전들은 다 자기의 지질학적, 지형학적특징들을 가지고 있다. 명산들과 바다의 기암석, 동굴들의 절묘한 경치들은 모두 물과 바람, 빙하 등 자연의 풍파에 의해 형성되였으므로 그에 대한 해설은 참관자들 모두에게 호기심과 관심을 불러일으키며 이를 통하여 자연현상에 대한 많은 지식과 상식을 안겨주게 된다.
그러므로 해설강사들은 자기 부문 학문에 대한 지식수준을 높여 유적유물, 명소, 천연기념물 하나를 설명해도 그 자연적 및 지질학적, 생태학적 특징과 형성과정 등을 과학적으로, 구체적으로, 원리적으로 설명해주어야 한다.

답사를 통한 직접적인 체험이 아니라 다양한 방법을 통한 '사회주의적 애국주의' 교양 활동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예컨대, '사회주의적 애국주의' 교양에 있어 명승지의 다양한 활용 방안을 제시한 사설에서는 학교에서 수학 등의 기타 과목에서 시험문제를 출제할 때 명승지 관련 수치를 활용하는 방법을 통해 명승지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익히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48]

한편, 우리 국가제일주의는 조선민족제일주의의 논리를 흡수 발전한 담론으로 2017년 11월 30일 『로동신문』 사설에 등장한 이후, 김정은 시대 국가 어젠다로 자리매김하였다[49]. 우리국가 제일주의는 2019년 1월 1일 김정은의 신년사를 통해 국가 어젠다로 제시되어 이후 '전면적 국가부흥시대의 새로운 이념'으로 규정되면서 강조되고 있는데, 민족유산보호사업을 통해 우리 국가제일주의 교양사업을 강화할 것이 언급되기도 하였다.[50]

우리 국가제일주의와는 국가 상징물과 관련된다. 국가 상징 교양 사업의 대상인 국가 상징물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하나는 헌법에서 규정한 국가 상징물로 국호, 국기, 국가, 국화 국장이 속하며, 다른 하나는 '민족적 전통'이 있다고 규정된

48) 명응범, "명승지를 통한 사회주의애국주의교양에서 나서는 몇가지 문제," 『인민교육』, 제3호, 2005. p. 14.
49) 전영선, "'민족제일'에서 '국가제일'로:'우리 국가제일주의'의 의미와 전망," 『KDI 북한경제리뷰』, 제22권 7호(2020), p. 30.
50) 저자 미상, "(사설) 민족유산보호사업에서 새로운 진격로를 열어 사회주의문명건설을 다그쳐나가자," 『민족유산』, 제1호(2019), pp. 3~4; 김보민, "북한 민족제일주의 담론의 변화: 조선민족제일주의에서 우리 국가제일주의로," 『현대북한연구』, 제24권 1호(2021), p.166.

것으로 국수(國樹) 소나무, 국견(國犬) 풍산개, 국조(國鳥) 참매, 국주(國酒) 평양소주 등이 속한다. 국가 상징물인 소나무, 풍산개, 참매는 자연유산 중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연속간행물 『민족유산』에서도 소개된 바 있다. 『로동신문』에서 국가 상징에 대한 교양 사업에 대해서는 "사람들에게 슬기롭고 아름다우며 강인한 조선 민족의 긍지와 자부심, 애국심을 심어주는데서 국수, 국견과 같은 국가상징에 대한 상식을 넓혀주고 그것을 소중히 여기도록 하기 위한 사업을 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라고 언급하고 있다.[51]

한편, 『민족유산보호법』 제58조에서는 '역사유적유물의 거점에 대한 건설과 그 관리'로, "민족유산보호기관과 해당 인민위원회는 민족유산이 집중되여 있거나 필요한 지역에 우리 나라의 력사와 민족전통을 실물로 보이줄수 있는 박물관, 민속공원, 민속거리, 력사교양마당, 비물질보급시설 같은 력사교양거점을 꾸릴수 있다"며 역사교양거점지처럼 북한 주민들이 역사 교양을 할 수 있는 거점지를 조성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김정은 시기에 자연유산과 관련된 역사 교양 거점지가 다수 조성되었다. 2016년 7월 24일에는 평양 대성산지구에 자연박물관과 중앙동물원 준공식이 진행되었다. 자연박물관의 구성을 살펴보면, 1층에는 우주관과 고생물관, 2층과 3층에는 동물관과 식물관, 4층에는 동물생태홀과 어린이학습실이 있다으로 구성되어 "학술적으로 뿐만 아니라 조형적으로 잘 꾸려져있어 참관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준다"고 소개된다.[52]



그림 15. 자연박물관 내부
*출처: SPN서울평양뉴스

51) 『로동신문』, 2018.11.18; 전영선, 앞의 논문, p. 32.
52) 유영목, "평양 자연박물관의 대자연의 세계," 『spn서울평양뉴스』, 2022.3.30., 〈https://www.sp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0732〉(검색일: 2023.11.22.)

오가산의 동식물전시관도 자연유산 관련 역사교양거점지 중 하나로 꼽을 수 있다. 『로동신문』 2020년 9월 6일 기사에 따르면, 오가산 자연보호구 관리소에서 동식물 전시관을 새로 조성했는데, 곰, 오소리, 꿩, 산달 등의 동물 박제품들과 산삼, 황경피나무, 삼지구엽초, 만병초를 비롯한 800여 점의 식물표본이 전시되어 있으며, 오가산의 자연 풍치를 부감하면서 휴식할 수 있는 정각과 휴식터 또한 조성되어 있다.

5) 인민대중제일주의의 부상과 자연유산의 보존과 활용

김정은 집권 10년차인 2021년 1월 제 8차 당대회에서 노동당 규약이 개정됐다. 이때 김일성-김정일주의가 당의 최고강령으로, 인민대중제일주의 정치가 사회주의 기본정치방식으로 정식화되었다. 기존 당규약에 '사회주의 기본 정치방식'으로 존속했던 '선군정치' 대신 '인민대중제일주의 정치'가 새로운 정치방식으로 등장[53]한 것은 김정은 정권이 민족유산보호사업을 '전인민적으로' 추진할 것을 강조해온 것과 무관하지 않다. '인민대중제일주의 정치'는 자연유산의 '보존'과 '활용'의 전 방면에 영향을 미친다.

'보존'과 관련해서 보면, 자연유산의 보존·관리에 있어 전인민의 동원을 주창하고 있다. 2014년 담화문에서 언급했듯이, 인민이 자연유산의 보존관리에 참여하는 것이 강조된다. 전인민은 자신이 속한 기관, 학교 등에 배정된 민족유산의 보호관리를 수행해야 한다. 전인민이 총동원되는 기간은 국토관리총동원기간으로 봄철민족유산애호월간인 4월과 가을철민족유산애호월간인 11월이다.

민족유산 보존관리에 전인민의 참여를 강요하는 한편 인민대중이 향유할 수 있는 문화휴양지로서 자연유산을 조성할 것도 강조된다.

> 명승지의 탐승도로와 시설물들을 애호관리하며 명소들을 더 많이 찾아내여 인민들에게 기쁨과 웃음을 더해주어야 합니다.

김정은 시기에 명승지의 도로와 시설물을 가꾸는 등 여러 사업이 수행됐는데, 이 과정에서 역사유적유물이나 천연기념물이 발견되기도 하였다. 김정은 시기에 관람환경 개선사업, 관광인프라 구축 등의 관광 개발 사업이 이뤄진 주요 자연유산은 능라도, 삼지연, 마전 등의 명승지를 예로 들 수 있다. 이들 명승지에서 대대적인

53) 김효은, "북한의 사상과 인민대중제일주의 연구," 『통일정책연구』, 30권 제1호(2021), p. 32.

유원지 개발[54]이 이뤄졌다. 김정은 시기에는 백두산 일대를 제외하고는 전통적으로 최고지도자들이 자주 현지지도하고 향유했던 명산에는 현지지도하지 않고, 마식령과 같이 기존에 주목받지 않았던 산을 대상으로 유희시설과 놀이시설을 조성하였다.

하지만, 백두혈통의 상징인 백두산에는 여러 번 현지지도했는데, 백두산 일대에서의 역사유적조사 발굴사업이 적극적으로 진행되어 천지호반과 장군봉마루에서 조선시대 제단유적과 대종교 관련 유물인 '천부경'을 새긴 대리석판, 단군을 상징하는 푸른색 옥돌판을 발굴했는데, 이에 대해 "우리 민족이 력사적으로 백두산으로 조종의 산, 민족의 성산으로 숭상했음을 논증"했다고 소개된다.[55]

IV. 결론: 자연유산 분야 남북 협력 방향

자연유산 분야의 남북 협력 방향을 제시하며 마무리하고자 한다. 먼저, 남북 전통조경 공동 연구 활성화 방안을 도모해야 한다. 남한에서는 2023년 5월 '국가유산체제'로 개편하며 자연유산 관계 법제에도 큰 변화가 생겼다. 2023년 3월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자연유산법)』이 제정되고, 5월에는 『국가유산기본법』이 제정되어 각각 내년 3월, 5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자연유산법』 제정에 있어 특기할 만한 부분은 '전통조경 연구의 활성화'이다. 남북 모두 자연유산의 양적 확대를 추구하며 역사문화·자연자원을 발굴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북한지역에 위치한 전통정원에 대한 심도깊은 공동연구를 통해 자연유산의 면적 확대를 함께 도모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전통정원의 경우에는 고문헌, 고회화 자료의 분석을 통한 원형 고증이 필수인 만큼, 남북에서 보유하고 있는 옛 글과 그림 자료를 공유하고, 현지 실사 등의 적극적인 학술교류를 통해 남북 공동의 유산으로서의 가치를 발굴할 수 있다.

두 번째로, 국제보호지역 등재와 보존관리에 있어 남북의 협력이 필요하다. 북한의 국제보호지역 등재 시 남한의 지원 등의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세계유산 체제에서 국경을 가로지르고, 다국가의 협력이 필요한 유형이 새롭게 제기되고 있는 만큼, DMZ와 같이 국경을 포함한 생태문화자원뿐 아니라 설악산-금강산과 같이 유사한 특성을 가진 연속 유산을 활용한 세계유산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남한에서는 현재 전통 조경의 분야의 역할 재정립과 외연 확대를 도모하며, 『자

54) 조선민족유산보존사, 『조선명승지도감』, 평양:조선민족유산보존사, p.2.
55) "민족의 력사와 전통을 빛내여주신 불멸의 령도업적(2),"『조선의 오늘』, 2022.3.13.

연유산법』을 제정함과 동시에 2023년 10월 말 『세계유산법』개정안이 통과되어 2024년 세계유산영향평가 실시를 앞두고 있다. 북한에서도 2건의 세계유산 등재 경험과 5건의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등재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국제적 기준에 발맞춰 민족유산 체계를 개편하였다. 대표적인 예로 유산의 보호구역 내 건설행위 등의 행위제한 항목이 증가하고, 금지행위 발각 시 처벌 수위가 높아지는 등의 변화가 감지된다. 이렇듯, 유산의 주변 환경을 둘러싼 보존 정책을 수립·추진함에 있어 남북 교류를 도모할 방안을 고민해볼 여지가 있다. 본 연구는 북한의 자연유산 정책을 조명한 연구로서 추후 남북 자연유산 교류 협력에 있어 기초자료로서 의의를 갖는다.

참고문헌

단행본

국가정보원. 『북한법령집 上·下』. 서울: 국가정보원, 2020.

김정욱·한무영·이동수·박순애·김기호. 『남북한 환경 비교정책. 2, 물환경, 대기, 폐기물, 도시계획』. 서울:서울대학교 출판부, 2008

대한토목학회, 『북한의 도시 및 지역 개발』. 서울:보성각, 2009

박상철·김창규. 『북한의 문화재보호관계법제』. 세종: 한국법제연구원, 1995.

이선. “북한의 자연유산 현황과 과제 - 천연기념물을 중심으로-.” 『북한의 문화·자연유산과 남북교류협력 이해하기』 대전: 국립문화재연구소, 2021.

이원호. “북한 자연유산의 보존관리 체계.” 『북한의 문화·자연유산과 남북교류협력 이해하기』 대전: 국립문화재연구소, 2021.

임병수. 『남.북한 법령의 위계체계 검토』. 세종:법제처, 2000.

전영선·신준영. 『북한의 문화재 정책과 남북 문화유산협력』. 서울:통일교육원, 2016.

조선민족유산보존사. 「조선명승지도감」『조선의 자연유산』. 평양:조선민족유산보존사, 2017.

조선민족유산보존사. 「조선천연기념물도감」『조선의 자연유산』. 평양:조선민족유산보존사, 2017.

논문

권혁희. “북한 전통문화의 문화유산화 과정과 주민 일상의 변화 : 비물질문화유산 지정과 주민 생활문화의 변화를 중심으로.” 『현대북한연구』 제24권 3호, 2021.

김덕순. “남북 무형유산 교류 협력의 다자간 협력 틀 모색 -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남북 공동 등재 사례.” 『문화재』 제52권 3호, 2019

김명신. “북한의 국제보호지역 정책 동향 연구.” 『현대북한연구』. 제24권 3호, 2021.

김보민. “북한 민족제일주의 담론의 변화: 조선민족제일주의에서 우리 국가제일주의

로.” 『현대북한연구』. 제24권 1호, 2021.

김성욱. “북한의 명승지·천연기념물보호와 관련한 법 제도에 관한 고찰.” 『가천법학』. 제5권 1호, 2012.

김서린. “북한 보호지역의 보전과 이용.” 『국립공원연구지』, 제9권 3호, 2018.

_____. “명승지에 대한 북한의 정책 특성과 국가유산화 과정- ‘조선 6대 명산’을 중심으로 -.”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22.

김서린·성종상. “법령과 문헌을 통해 본 북한 명승지의 유형과 특성.” 『통일정책연구』. 제30권 2호, 2021.

김순녀. “민족유산보호사업에서 해설강사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이기 위한 몇가지 문제.” 『민족유산』. 제1호, 2019.

김지혜. “우리나라 명승 지정의 현황 및 개선방향 연구: 한.중.일.북한과의 비교.” 상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7.

김채원. “북한 무용 분야 무형유산의 계승과 그 실재에 관한 소고(小考).” 『무형유산』. 제7호, 2019.

김효은. “북한의 사상과 인민대중제일주의 연구.” 『통일정책연구』. 제30권 1호, 2021.

나명하. “남북한 천연기념물 보존관리의 비교연구.” 한경대학교 산업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7.

_____. “우리나라 天然記念物 保存 管理에 關한 硏究.” 조선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10.

남궁승태. “남북 통일을 대비한 문화재보호법제에 관한 연구.” 『문화정책논총』. 제14집, 2002.

남보라. “북한의 문화재 보호관리기관 연구-‘민족유산보호국’의 변천과 최근변화를 중심으로-.” 『민족문화연구』, 제94호, 2022.

남보라·서순복. “북한의 문화유산 보호 관련 법제의 변천과 내용분석.” 『법학논총』, 제21권 3호, 2014.

명응범, “명승지를 통한 사회주의애국주의교양에서 나서는 몇가지 문제,” 『인민교육』, 제3호, 2005.

박성진. “세계유산 ‘개성역사유적지구’의 보존·활용 방안 연구.” 『현대북한연구』.

제16권 3호, 2013.

박영정. “북한의 무형문화유산 정책 동향 연구.” 『무형유산』. 제7호, 2019.

배인교. “북한의 전통음악관련 무형유산의 전승과 남북한 협력 방안.” 『무형유산』. 제7호, 2019.

서유석. “북한불교의 이해와 남북 불교 교류의 과제.” 『보조사상』. 제55호, 2017.

송민선. “인류무형문화유산 남북 공동등재를 위한 교류협력방안 연구.” 『문화재』 제50권 2호, 2017.

신법타. “불교입장에서 본 생명가치와 남북화해 협력.” 『생명연구』. 제5집, 2003.

신현욱·박영정. “북한의 무형문화유산 법제 도입 현황과 무형문화유산 분야 남북 교류 협력 방안.” 『한국민요학』 제41집, 2014.

오양열. “북한의 문화재 정책과 남북 교류·협력 방안.” 『북한연구』. 6, 2003.

윤동환. “남북한 무형문화유산 교류의 전망.” 『무형유산학』. 제3권 2호, 2018.

이강민. “북한 명승의 현황 및 지정분석에 관한 연구.” 상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3.

이우영·남보라. “새로운 접촉지대의 모색. 무형문화유산: 인류무형문화유산 ‘씨름’을 중심으로.” 『현대북한연구』 제22권 3호, 2019.

저자 미상. “[아름다운 조국강산] 최근에 새로 지정등록된 천연기념물들.” 『민족문화유산』. 제2호, 2017.

_____. “(사설) 민족유산보호사업에서 새로운 진격로를 열어 사회주의문명건설을 다그쳐나가자.”『민족유산』. 제1호, 2019.

_____.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민족유산 보호사업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을 길이 빛내여 나가자.” 『민족문화유산』. 제4호, 2019.

_____.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자연유산들을 더 많이 찾아내여 훌륭히 꾸리고 보호하기 위한 투쟁”. 『민족유산』제1호, 2019.

_____. “새로지정된 천연기념물들.” 『민족문화유산』. 제1호, 2017.

전영선. “‘민족제일’에서 ‘국가제일’로:‘우리 국가제일주의’의 의미와 전망.” 『KDI 북한경제리뷰』. 제22권 7호, 2020년.

정성장. “김정은 시대 북한의 입법 및 국가대표기구 연구: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의 역할과 엘리트를 중심으로.” 『KDI 북한경제리뷰』. 제16권 5호, 2014년.

차승주. “김정은 시대 북한의 정치사상교육: 5대 교양을 중심으로.”『도덕윤리과교육』. 제64호, 2019.

최광식. “통일시대 남북한 문화유산 교류와 협력.” 『博物館學報』. 제33호, 2017.

최명철. “민족유산보호사업을 과학화하는데서 나서는 과업.” 『민족유산』. 제1호, 2019.

최성은. “불교문화재의 대북(對北)교류에 관한 고찰 -불교조각과 석조문화재를 중심으로-.” 『강좌미술사』. 제41호, 2013.

하문식. “북한의 문화재 관리와 남북 교류.” 『한국학』. 제30권 1호, 2007.

기타자료

『민주조선』

『로동신문』

『조선신보』

『조선의 오늘』

『조선중앙통신』

국가문화유산포털〈www.heritage.go.kr〉

네이버 표준국어대사전〈ko.dict.naver.com〉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www.uniedu.go.kr〉

통일부 북한정보포털 〈nkinfo.unikorea.go.kr〉

통일법제 데이터서비스 〈www.unilaw.go.kr〉

UNESCO World Heritage〈whc.unesco.org〉

리버티 코리아 포스트 〈www.lkp.news〉

spn서울평양뉴스 〈www.spnews.co.kr〉

「국가유산기본법」

「명승지, 천연기념물보호법」

「문화유산보호법」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별표 1의 2

「민족유산보호법」